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 수행기관 **삼성 KPMG**



일러두기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은 2018년 8월에 발간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 한 것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정지원으로 삼정회계법인이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실무상의 참고 목적으로 다양한 자료에서 발췌, 인용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의 정확성을 발간기관에서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내용은 기업경영의 환경 변화,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삼정회계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책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2020.6)'에서 옮겼음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 수행기관

삼성 KPMG

제1부 감사위원회 운영 매뉴얼

I. 내부감사기구 • 6

1. 감사위원회 • 6
2. 내부감사부서 • 17

II.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 23

1. 감사위원회 구성 • 23
2. 감사위원 선임과 종임 • 32
3.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43

III. 감사위원회 운영 • 49

1.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49
2. 감사위원회 활동 • 54
3. 감사위원회 평가 • 75
4. 감사위원 보수 • 84
5.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 92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 98

1. 직무와 권한 • 98
2. 재무보고 • 118
3. 내부신고 • 131
4.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 137
5. 내부감사부서 • 159

V.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 168

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 168
2. 외부감사 실시단계 • 189
 - 2.1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의사소통 • 189
3. 외부감사 종료단계 • 206

VI.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 226

1.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 226
2.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 • 233

제2부 감사위원이 알아야 할 핵심감사사항 (KAM)

-
- I. 개요 • 248
 - II. 핵심감사제에서 감사위원회(감사)의 역할 • 250
 - III. 핵심감사사항 통계 • 253
 - IV.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시 고려사항 • 256
 - V. 핵심감사사항으로 고려할 주요 사항(업종별) • 258
 - VI. 결론: 감사위원회(감사)가 해야 할 일 • 273

색인 • 275

제1부

감사위원회 운영 매뉴얼



I

내부감사기구

II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III

감사위원회 운영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V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VI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I. 내부감사기구

1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

1.1 감사위원회 설치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기업은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음 단, 감사위원회 설치 시 감사는 둘 수 없음 	법 제409조 제1항, 제4항 제415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상근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특례 감사위원회 설치¹⁾ 회사 	법 제542조의10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1)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두 유형으로 제415조의2에 의한 감사위원회와 제542조의11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상장 여부 및 자본·자산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함

- 비상장회사,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제415조의2에 의한 감사위원회 설치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의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상법 제542조의11에 의한 감사위원회 설치

※ 이하 이 책에서 필요한 경우 상법 제415조의2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일반 감사위원회”, 제542조의11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특례 감사위원회”라 함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예외: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회사 	법 제542조의11 제1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넥스시장 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는 상법상 상근감사 설치 의무가 없음 	법 제165조의19 시행령 제176조의1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예외: 자산총액이 7천억 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6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 중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금융회사는 상근 감사를 두어야 함 - 예외: 시행령 제16조 제3항 단서 각 호의 회사,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법 제19조 제8항 시행령 제16조 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감사를 두어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 여부를 정함 	법 제24조 제1항,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형 공기업,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법 제24조 제1항 제20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법 제24조 제1항 제20조 제3항

2) 이하 이 책에서 '자본시장법'이라 함

3) 이하 이 책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

4) 이하 이 책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내부감사기구의 유형을 변경하기 위해선 정관을 변경해야 함
 - 내부감사기구 유형을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그 이후에 의결해야 함
 - 정관 변경 안건을 먼저 의결하지 않은 채로 다뤄지는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자동으로 부결됨
- 모범규준은 대규모 상장기업에게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을 제시함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대규모 공개기업’의 기준으로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도 이 기준을 원용함
 - 자산총액이 1조 원 미만인 기업도 선택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참고로, 국내 법령에서는 감사위원회 외에 다른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의무를 회사의 유형 및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고 있음
 -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⁵⁾
 -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⁶⁾
 -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⁷⁾

5)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6)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6조.

7)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모범규준은 감사를 설치한 상장회사 중 상근감사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에게도 상근감사 설치를 권고함
 - 감사의 상근 여부는 정관의 변경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선임된 감사가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상법에서 요구하는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 이사회

2.2 (주식)

대규모 공개기업이란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공개기업을 의미한다.

III. 감사기구

1.1 대규모 공개기업은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뉴욕증권거래소는 모든 상장회사에게 감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함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6 Audit Committee

Listed companies must have an audit committee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Rule 10A-3 under the Exchange Act.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모든 회사에게 감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함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Provision 24**

The board should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of independent non-executive directors, with a minimum membership of three, or in the case of smaller companies, two. The chair of the board should not be a member. The board should satisfy itself that at least one member has recent and relevant financial experience. The committee as a whole shall have competence relevant to the sector in which the company operates.

모범 기준

1.2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여 이사회 차원에서 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제시하여야 함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회사는 감사의 설치 근거와 권한, 책임,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함
 - 감사는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Ⅲ. 감사기구

1.4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의 목표, 사명 그리고 조직에 대한 내용과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권한, 의무, 책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만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감사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모범 기준

1.3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권한과 책임은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 감사위원회(감사)에게 업무감사의 권한이 부여됨	법 제412조 제415조의2 제7항
	• 감사위원회(감사)에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등 회계감사의 권한이 부여됨	법 제447조의3 제447조의4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우리나라 법제는 감사에게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를 대체하여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에도 준용됨
- 업무감사 영역에서, 적법성 감사뿐 아니라 타당성 감사까지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어져 있음⁸⁾
 - 적법성 감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감사하는 것이고, 타당성 감사는 위법성이 없더라도 경영의 타당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감사하는 것을 의미함

8) "내부감사인(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한국감사협회 홈페이지, http://theiia.kr/new_html/03_infoservice/memguide_04_view.php?idx=110&iiacate=b&PHPSESSID=fd59f7fe63a76e3eff5356a332b6c3c4

- 다수의 의견은 타당성 감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타당성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소수의 의견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타당성 감사가 업무감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임
- 모범규준은 적법성 감사를 기본으로 하되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모범 기준

1.4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음 •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결의할 수 없음 	법 제393조의2 제4항 제415조의2 제6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이지만 감사를 대체하는 직무의 성격상 다른 이사회내 위원회보다 고도의 독립성이 필요함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면서도 이사회내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기감독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있음⁹⁾
-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의 확보 및 유지 관리, 감사직무 수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상법 제415조의2 제6항.

- 예시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증거 처리 및 감사직무 관련 문서화된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담당자(담당조직) 지정 등이 있으며, 회사의 내부통제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계할 수 있음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내 위원회 중 하나인 것과 달리 감사는 이사회와 분리된 기관임
-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2 내부감사부서

모범 기준

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금융사 지배구조법	•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지원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함	법 제20조 제2항
공공기관 운영법	• 공공기관은 감사부서를 설치해야 함 ¹⁰⁾ • 기관장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 배치 및 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법 제32조 제5항, 제6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의 일상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필요함
 - 상법에는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내부감사부서 설치 규정을 두고 있음
 - 2016년 7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에서도 내부감사기구 산하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에서의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지원조직, 내부감사담당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 특히 전월 사외이사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의 경우 일상적인 감사를 상시로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필요함

10) 공공기관운영법 제32조 제5항에서 언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13조에서 감사부서 설치를 규정함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요청해야 함
 - 일반 회사로서 내부감사부서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지 않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목적, 공시 서식상 기재 목적 등 실질적 필요성을 근거로 요청해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때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음¹¹⁾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는데¹²⁾, 이때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음
 -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내부통제부서나 내부감사부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 한국보다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¹⁴⁾,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되지 않거나 충실히 운영되지 않으면 감사의견이 변형될 수 있으며,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의 7개 회사가 해당 사유로 의견이 변형된 사례가 있음¹⁵⁾
- 기업공시서식은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부서명, 직원수, 직위, 주요 활동내역 등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 다만, 기업공시서식에서 규정하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상 내부감사부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님

1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1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원칙 16.

1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64.

14) 미국은 제도로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유사함

15)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Fifteen Year Reviews", 2019.10

1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2-1조.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위원회가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의체인 것과 달리, 감사는 단독으로 하나의 주체임
- 회사에 상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라 하더라도, 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규정

뉴욕증권거래소는 모든 상장회사에게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요구함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7 Audit Committee Additional Requirements

(c) Each listed company must have an internal audit function.

Commentary: Listed companies must maintain an internal audit function to provide management and the audit committee with ongoing assessments of the listed company's risk management processes and system of internal control. A listed company may choose to outsource this function to a third party service provider other than its independent auditor. While Section 303A.00 permits certain categories of newly-listed companies to avail themselves of a transition period to comply with the internal audit function requirement, all listed companies must have an internal audit function in place no later tha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company's listing date.

General Commentary to Section 303A.07: To avoid any confusion, note that the audit committee functions specified in Section 303A.07 ar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audit committee and may not be allocated to a different committee.

사례 예시

- 국제내부감사인협회(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IIA)에서 제시하는 국제내부감사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Internal Auditing)에 따르면, 내부감사부서의 보고라인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그림 1 -1> 내부감사부서의 보고라인 설정 예시

구분	내용
조직 구조	대표이사/감사위원회 병행 편제 <pre> graph TD Board[이사회] --- Chairman[대표이사] Board --- Audit[감사위원회] Chairman --- InternalAudit[내부감사] InternalAudit --- Divisions[각 본부] </pre>
보고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이중 보고 • 최고경영진에게도 보고라인을 두나, 실질적인 기능적 보고는 감사위원회(또는 이사회)에게 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 • 감사위원회(감사)가 내부감사 업무 관리 및 부서장 인선에 관여

모범 기준

2.2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할 경우, 감사위원회(감사)를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부감사부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인 구성과 권한, 의무,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특히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과 관련하여 신분상의 불안정 또는 불이익이 부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회원사에 제공하는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표준예시’에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예시가 포함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음(‘제4장 감사부설기구’에 해당)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Ⅲ.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 조치까지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1 감사위원회 구성

모범 기준

1.1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는 회의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함 	법 제415조의2 제2항
금융사 지배구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또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함 	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 운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 설치 시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함 	법 제20조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상법이 감사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달리 반드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 이사회내 위원회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
-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대신하여 회사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담당하므로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함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는 회의체가 아닌 단독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며, 감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 이사회

5.2 이사회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뉴욕증권거래소는 모든 상장회사에게 감사위원회가 3명 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규정함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7 Audit Committee Additional Requirements

(a) **The audit committee must have a minimum of three members.** All audit committee members mus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independence set out in Section 303A.02 and, in the absence of an applicable exemption, Rule 10A-3(b)(1).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3명 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규정함. 다만, 영국 상장회사 순위 350 위 이하의 소규모기업은 2명만으로 구성할 수 있음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Provision 24

The board should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of independent non-executive directors, with a minimum membership of three, or in the case of smaller companies, two. The chair of the board should not be a member. The board should satisfy itself that at least one member has recent and relevant financial experience. The committee as a whole shall have competence relevant to the sector in which the company operates.

모범 기준

1.2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소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함 	법 제542조의10 제1항 제542조의11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공인회계사, 회계·재무분야 학위자,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정부기관 등의 회계·재무 업무 경력자가 규정됨 	시행령 제37조 제2항
금융사 지배구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는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함 	법 제19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공인회계사, 회계·재무분야 학위자,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정부기관 등의 회계·재무 업무 경력자가 규정됨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으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함
 - 감사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회계감사이며,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이외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감사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가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감독하는 업무이므로, 회계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함

- 글로벌 경향을 반영하여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에서는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권고함

-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의 감사위원회에도 회계, 재무, 감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대한 공시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함
 - 현행 기업공시서식에서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 감사 위원이 누구인지와 전문가 유형, 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공시의 주체는 회사이나, 감사위원회는 스스로 관련된 내용의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함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도 감사위원회와 같이 회계감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회계, 재무, 감사 관련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감사의 회계감사 역할을 위한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에 게 적용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참고할 수 있음

참고 규정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상 재무전문가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재무제표와 일반적인 회계원칙(GAAP)에 대한 이해
- 재무제표를 작성 또는 감사해 본 경험
- 회계추정, 총당금, 적립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회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

Sarbanes-Oxley Act(2002)

SEC. 407. Disclosure of Audit Committee Financial Expert.

(b) Considerations.--In defining the term "financial expert" for purposes of subsection (a), the Commission shall consider whether a person has, through education and experience as a public accountant or auditor or a principal financial officer, comptroller, or principal accounting officer of an issuer, or from a position involving the performance of similar functions--

- (1) an understanding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nd financial statements;
- (2) experience in--
 - (A) the preparation or auditing of financial statements of generally comparable issuers; and
 - (B) the application of such principles in connection with the accounting for estimates, accruals, and reserves;
- (3) experience with internal accounting controls; and
- (4) an understanding of audit committee functions.

뉴욕증권거래소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 감사위원에게도 전월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7 Audit Committee Additional Requirements

(a) The audit committee must have a minimum of three members. All audit committee members mus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independence set out in Section 303A.02 and, in the absence of an applicable exemption, Rule 10A-3(b)(1).

Commentary: Each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must be financially literate, as such qualification is interpreted by the listed company's board in its business judgment, or must become financially literat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his or her appointment to the audit committee.

**금융당국
보도자료**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공시현황 점검결과 (금융감독원, 2019.8.)」

- 감사위원회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공시현황 점검 결과
 - 2018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감사위원회 내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두어야 하는 회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425개사임
 - 기업공시서식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내에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해당 위원에 기본자격과 근무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나, 공시 현황 조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425개사 중 253개사(59.5%)가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특정하였고 172개사(40.5%)는 특정하지 않음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관련 경력기재 점검 결과, 기본자격과 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87개사(20.5%)에 불과하였음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 공인회계사 유형이 137개사(32.2%)로 가장 많았음

〈표 II-1〉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공시현황

유형	회사 수	비율
공인회계사	137	32.2%
회계·재무 분야 학위자	91	21.4%
상장회사 회계·재무 경력자	33	7.8%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	112	26.4%
기타 (유형 추적이 어려운 경우)	52	12.2%
계	425	100%

- 상기 조사 이후 감독당국은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전문가 현황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¹⁾

제7-2-1조(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다.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2-1조.

모범 기준

1.3 감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구성 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함 (수인 공동대표 가능) 	법 제415조의2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외이사이어야 함 	법 제542조의10 제1항 제542조의11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도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는 회의체가 아니므로 구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위원 선임과 종임

모범 기준

2.1 감사위원 선임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 감사위원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 선임함	법 제415조의2 제1항 제393조의2 제1항
	•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함	법 제542조의10 제1항 제542조의11 제1항 제542조의12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 상장회사는 감사를 선임할 경우 이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의안을 상정하여야 함	법 제542조의12 제5항
금융사 지배구조법	•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해야 함	법 제19조 제5항
	•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함	법 제19조 제6항

법규	내용 요약	조문
공공기관 운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을 상임감사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법 제25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을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총수입액이 1천억 원 미만이거나 직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감사는 같은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법 제25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 선임방식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요하며, 감사위원회가 주주를 대리하여 기업경영과 회계처리를 감독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일반 감사위원회도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함
 - 감사위원은 이사회보다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주주에 대한 감사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됨
-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선임할 때 비금융회사는 일괄선출방식이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분리선출방식이 일부 적용됨
 -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특례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에 대해, 현행 상법은 일괄선출방식을 적용하여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사를 일괄하여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음
 - 이 경우, 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 선임 단계에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됨
 - 한편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분리선출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이 제한됨
-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취지,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는 분리선출방식이 장점을 가짐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위원이 이사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고, 회사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것과는 달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선임됨

모범 기준

2.2 대주주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²⁾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 선임 시, 보유한株式이 3%를 초과하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株式에 대해서 의결권이 제한됨(상장·비상장회사 모두 해당)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에게도 적용됨 	법 제409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회사에서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의株式을 합하여 3%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株式에 대해서 의결권이 제한됨 	법 제542조의12 제3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보유한株式이 3%를 초과하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株式에 대해서 의결권이 제한됨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에게도 적용됨 	법 제542조의12 제4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금융사 지배구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에서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의株式을 합하여 3%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株式에 대해서 의결권이 제한됨 또한 보유株式이 3%를 초과하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株式에 대해서 의결권이 제한됨 	법 제19조 제6항, 제7항, 제9항 상법 제409조 제2항

2) 관련 법규 내용 중 株式의 비율은 의결권 없는 株式을 제외한 발행株式총수 대비 비율임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동

- 감사위원회(감사)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주주 이외에 다양한 소수주주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내 법제는 감사위원(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국내 상장회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이 2016년 제정되었음
 - 특히 국내 대표적인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활성화됨
 -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감사) 선임 안건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대주주를 견제할 때 의결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항목임

모범 기준

2.3 감사위원 추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함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해야 함 	법 제542조의8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34조 제2항
금융사 지배구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선임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해야 함 	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할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법 제19조 제4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추천을 모든 상장회사에 권고함
 -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회 또는 주주가 추천하는 경우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 기존 경영진 또는 대주주와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우려가 존재함

- 이사로 선임하는 후보를 물색하는 단계에서 독립적인 주체(사외 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등)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이후 감사위원 선임 단계에서 추천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음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모범규준은 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독립적 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모범 기준

2.4 감사위원 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인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 	법 제383조 제2항,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에서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년 재직할 수 있음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함 	법 제410조
금융사 지배구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은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년 재직할 수 있음 	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0항
공공기관 운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감사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은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의 임기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3년 내에서 임기를 정할 수 있음
 - 감사위원은 재선임 및 중임이 가능하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총 재직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동일인이 장기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6년, 계열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면 9년까지 재직할 수 있음
- 감사위원의 임기가 너무 짧은 경우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감사위원이 회사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감사위원 임기를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을 권장함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는 별도로 규정되어, 이사의 임기는 3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함
- 감사는 사외이사와 달리 총 재직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장기간 감사로 활동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모범 기준

2.5 감사위원회 결원 시 충원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인 이상의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의 수가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위원(감사)의 원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감사위원(감사)은 새로운 감사위원(감사)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를 유지함 • 임기 만료나 퇴임 외에 다른 사유로 사임한 경우엔 해당되지 않음 	법 제386조 제1항 제393조의2 제5항 제4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가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함 	법 제542조의11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의 결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감사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일시 감사를 선임할 수 있음³⁾ 	법 제386조 제2항 제415조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 결원 시 가능한 빠른 기간 내⁴⁾에 충원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본 규정이 감사위원에도 준용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법원에서 사외이사를 일시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사례는 존재함

4) 상장회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함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의 결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에 일시 감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감사가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 중인 경우와 같이 퇴임감사로 하여금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함⁵⁾
- 이때 감사의 퇴임 사유가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함⁶⁾

5) 대법원 2001. 12. 6. 선고 2001그113 판결: 이사에 대한 판단 법리를 감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문구 일부 수정

6)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518 판결

3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모범 기준

3.1 독립성

감사위원은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주요주주와 혈연 등 특수한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업무 관련성,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해관계 등에 따른 결격요건이 규정됨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함 	법 제382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회사의 경우, 위 요건에 더하여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독립성과 관련하여 더욱 엄격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이 적용됨 	법 제542조의8 제2항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4항,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가 설치한 상근감사는 독립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결격요건 규정이 있음 	법 제542조의10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게도 독립성과 관련된 결격요건이 적용됨 	법 제542조의11 제3항 제542조의10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함 	법 제411조

법규	내용 요약	조문
금융사 지배구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이 되지 못하는 자를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업무 관련성,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관계, 이해관계 등에 따라 결격요건이 규정됨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상근감사는 모두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조항을 준용하여 동일한 결격요건 규정이 적용됨 	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0항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사, 감사의 자격을 상실함 	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은 경제적으로 또는 신분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기감독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감사 대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의미함
 -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는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회사는 경영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규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추가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는 원칙적으로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⁷⁾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
 - 자회사의 감사나 모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은 자기 감독이나 감사 대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겸임이 허용됨

7) 상장회사의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결격요건이 있음(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모범 기준

3.2 전문성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함 	법 제542조의10 제1항 제542조의11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공인회계사, 회계·재무분야 학위자,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정부기관 등의 회계·재무 업무 경력자가 규정됨 	시행령 제37조 제2항
금융사 지배구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법 제6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는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함 	법 제19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공인회계사, 회계·재무분야 학위자,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정부기관 등의 회계·재무 업무 경력자가 규정됨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 회계, 감사 관련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원칙적으로 감사위원은 회계 관련 법규, 재무제표 작성원칙, 감사인의 판단을 이해하고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함
 - 모든 감사위원이 재무, 회계, 감사 관련 경험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감사위원회 업무에 있어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감사위원은 최소한의 재무 및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또한 효과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속한 산업, 법률, 규제, 기술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회계를 포함하여 법률, 산업, 기술 등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동질적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됨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정해놓은 자격 및 경력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계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적용하고 있는 회계원칙에 대한 이해
 - 회사가 수행한 회계추정, 충당금, 적립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감사해 본 경험
 -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

- 감사위원회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면, 동일한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문성 측면에서 회계 또는 재무 뿐 아니라 법, 경영, 산업, IT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음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는 감사위원회처럼 회의체가 아니므로 다양성을 제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우선순위가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감사 모범규준은 감사업무와 관련된 법규, 재무제표 작성원칙, 감사인의 판단 등 감사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 이사회

- 1.3 이사회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관심을 가진 이사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경영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 기준

3.3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전문성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높은 수준의 회계와 재무적 지식을 지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장의 역할은 감사위원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그들의 기여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감사위원회 업무를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주주, 채권자, 외부감사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는 회의체가 아니기에 위원장을 두지 않으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장 관련 해당사항 없음

Ⅲ. 감사위원회 운영

1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모범 기준

1.1 운영규정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에 부여한 위임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는 감사위원회의 임무, 책임, 구조, 절차 자격이 회사의 특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같이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의 책임사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되는 역할과 책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행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함

〈표 III-1〉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¹⁾

항목	내용
총칙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본자세,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직무와 권한, 의무, 책임, 위원회의 의견표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구성, 위원장, 회의 소집권자, 소집절차, 결의방법, 부의사항, 의사록
감사의 구분·방법	감사의 기능별 구분, 감사의 실시방법,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감사부설기구	감사부설기구, 감사요원의 자격, 감사요원의 인사 및 대우, 감사요원의 행동규범
감사실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의 실시, 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감사위원간 의견교환, 내부감사와의 연계, 내부 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중요 회의에의 출석, 문서 등의 열람, 재산의 조사, 거래의 조사, 현장 조사,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의 검토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외부감사인의 선정,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감사결과보고	감사록의 작성,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주주총회에의 보고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는 회의체가 아니므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중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부분을 제외하고 포함하는 항목은 동일함

1) 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표준예시", 2018.12.12

참고 규정

영국 재무보고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위한 가이드” 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을 언급함: 재무제표의 정확성, 재무성과 관련 공시와 공시에 포함된 주요 재무정보 판단의 기준에 대한 검토, 외부감사인, 선임, 감독, 평가에 대한 의무, 회사 내부감사의 유효성 모니터링 및 검토, 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체계 검토 등

UK FRC Guidance on Audit Committees

10.

The main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set out in written terms of reference tailored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ompany.

국제내부감사인협회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모범안"에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크게 감사위원회의 '조직원칙', '운영원칙', '운영절차', '감독'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위원회의 감독활동에는 재무보고 감독, 내부통제 감독, 내부감사 감독, 외부감사인 감독, 이사회 및 주주에 대한 보고 등이 포함됨

모범 기준

1.2 규정개정

감사위원회는 감사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이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매년 검토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감사위원회가 자체평가를 수행하는데 기준이 되므로, 운영규정과 자체평가는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III장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1.4에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영국 재무보고위원회는 매년 운영규정 대비 감사위원회의 효과성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²⁾
-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주체는 이사회이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정하여 감사위원회를 그 주체로 볼 수 있음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III.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1.4.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2) UK FRC, "Guidance on Audit Committees 10, 2016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부록상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2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함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8조(기관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 지침의 세부사항을 정한 기관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 활동

모범 기준

2.1 감사위원회 활동계획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 및 비회의 활동과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연 단위로 정기회의 및 비회의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함
 - 연간 단위의 감사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와 같은 회의활동과 현장방문, 임직원 간담회, 워크숍 같은 비회의활동을 포함하여 계획³⁾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별 감사위원도 감사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에 따라 감사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간 시간투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함
- 감사위원회 안전개발 및 연간계획 수립
 - 감사위원회 안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중요한 안전을 개발하여 논의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가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 보고되는 안전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방식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핵심적인 안전도출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사전에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외부감사인 등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3) 루이비통 감사위원회는 주요 세 가지 업무별로 시간을 100을 총합으로 보았을 때 50은 재무보고 감독, 30은 리스크 내부통제, 20은 기타업무 비율로 할금배분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단계에서 업무별 시간배분을 체계적으로 이행중임

할 필요가 있음

- 안건의 특성에 따라 연간업무, 분기업무, 필요시 수행하는 업무로 구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도출 가능함

- 재무보고 감독
-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 내부감사 감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 부정조사
- 내부통제시스템 감독
- 이사의 직무집행
- 자회사 감독
- 대외 커뮤니케이션

■ 상기의 감사위원회 활동영역을 고려한 안건개발 예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표 III-2〉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영역을 고려한 안건개발⁴⁾

구분	빈도			시행시점			
	연간 1회	분기	필요 시	Q1	Q2	Q3	Q4
재무보고 감독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검토	●	●		●	●	●	●
감사보고서 제출	●			●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			●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			●				
선정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 여부			●				

4) 삼정KPMG ACI, "Audit Committee Handbook 2018 2nd edition", p363-365, 2018.11

〈표 III-2〉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영역을 고려한 안건개발⁴⁾ (계속)

구분	빈도			시행시점			
	연간 1회	분기	필요 시	Q1	Q2	Q3	Q4
외부감사인인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 계획보고	●				●		
감사위원회 - 외부감사인간 논의			●				
외부감사인 활동 사후평가	●		●				
내부감사 감독							
임직원 업무집행에 대해 감사 후 결과보고			●				
정기 내부감사계획 수립	●			●			
특별 내부감사 집행			●				
내부감사조직 임면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제·개정			●				
부정조사							
외부감사인인 부정행위 등 보고			●				
감사위원회의 부정 조사			●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인에 조치결과보고			●				
내부통제시스템 감독							
내부통제보고	●						●
내부통제평가	●						●
내부감시장치평가	●						●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				
준법감사인 또는 준법지원인의 선임·해임·보직 변경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결의			●				
이사의 직무집행							
경영 의사결정(공장 신설, 제품 특허 취득, 유무형자산 매각, 하자제품 리콜 등에 대한 논의 또는 결정			●				

〈표 III-2〉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영역을 고려한 안건개발⁴⁾ (계속)

구분	빈도			시행시점			
	연간 1회	분기	필요 시	Q1	Q2	Q3	Q4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최대주주 등) 과의 거래 논의			●				
자회사 감독							
자회사 및 기타 계열회사의 내부감 사 결과, 경영실적 보고 수령	●						
대외 커뮤니케이션							
정기주주총회 안건 검토	●			●			
공시 이행 현황 검토		●	●	●	●	●	●
공통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자문 요청			●				

**체크리스트 ·
템플릿**

■ 감사위원회 연간활동계획 예시⁵⁾

시기 ⁶⁾⁷⁾	설명	필수 여부	관련 규정
1월 (변경 가능)	내부감사 평가 및 내부감사부서장 임면 동의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5
1~2월 (변경 가능)	정기적 감사위원회 자체 평가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3
	정기적 감사위원회 규정 평가 및 평가 내용 공시, 개선사항 도출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1
2월	정기총회 6주 전: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수령 기한	필수	상법 제447조의3

5)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 중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현행 상법에 따라 작성함.

6)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지는 항목의 순서를 배치할 때에는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 말에 개최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3월 말에 정기주주
총회가 열린다는 가정 하에 배치하였음. 하지만 이 캘린더를 참고할 때에는 이러한 가정과 실제 주주총회 개최일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

7) 시기가 변경 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관행이나 강제성이 없는 규정에서 권고하는 시기로 분류함

■ 감사위원회 연간활동계획 예시⁵⁾ (계속)

시기 ⁶⁾	설명	필수 여부	관련 규정
2월	<p>2월 14일(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직전 회계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은 회사)</p> <p>[선행되어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및 관련내용 문서화 	필수	외부감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3월	<p>재무제표 수령으로부터 4주 후: 감사의 감사보고서 이사에 제출 기한 단,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제출</p>	필수	상법 제 447조의 4 제1항 제542조의12 제6항
	<p>정기총회 1주 전: 외부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수령 기한</p>	필수	외부감사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p>[선행되어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과의 핵심감사항목 관련 커뮤니케이션 	필수	회계감사기준 260, 701
	<p>[후행되어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사항 이행 준수 여부 확인 	필수	외부감사법 제10조
	<p>정기총회 1주 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이사회에 대면보고 기한</p> <p>[선행되어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대면보고 수령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면회의 개최 및 관련 내용 문서화 	필수	외부감사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정관	<p>정기주주총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불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진술 	필수	상법 제413조
	<p>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p>	필수	상법 제382조, 제409조, 제415조의2, 제542조의12

■ 감사위원회 연간활동계획 예시⁵⁾ (계속)

시기 ⁶⁾	설명	필수 여부	관련 규정
4월	4월 1일: 주권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필수	자본시장법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7조
	신규 선임 감사위원 대상 입문교육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5
4월 (변경 가능)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필수	상법 제415조의2
4~5월	1/4분기 내부감사 보고 수령, 재무제표 검토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2, IV.2
7~8월	2/4분기 또는 반기 내부감사 보고 수령, 재무제표 검토		
10~11월	3/4분기 내부감사 보고 수령, 재무제표 검토		
12월 (변경 가능)	감사위원회 활동계획 및 내부감사계획 수립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I.2
12월	12월 31일: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으며 직전 회계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은 회사)	필수	외부감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수시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필수	회계감사기준 260
	리스크 감독활동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4
	공시정보 검토		자본시장법 제162조
	내부신고제도 감독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3
필요 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검토 및 승인	필수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필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부정조사 및 보고	필수	외부감사법 제22조

모범 기준

2.2 감사록 작성 및 유지

감사위원회는 감사수행 후 감사실시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감사)는 감사 실시사항에 대해 감사록을 작성해야 함 감사록에는 감사 실시 요령과 그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법 제413조의2 제415조의2 제7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을 수행한 후 감사실시의 주요 내용과 감사결과가 포함된 감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함
 - 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에 따르면,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위 규정을 준용하므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함
 -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III. 감사기구

I. 내부감사기구

1.6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모범 기준

2.3 회의

감사위원회가 모든 안전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는 개별 감사위원이 모든 안전에 대하여 숙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양한 안전을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질문을 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회의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사 내 다른 회의일정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특히 일부 회사에서 이사회 직전에 형식적으로 간략하게 진행되는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관행은 지양되어야 함
 - 또한 개별 감사위원은 회의 참석 전에 중요한 회의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여 회의에서는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의는 크게 의결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와 보고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로 구분됨

〈표 III-3〉 감사위원회 회의 유형 예시⁸⁾

유형	회의 목적	관련 법규
의결 안건	재무제표 감사	상법 제447조의3, 제447조의4, 제415조의2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승인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3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5항
	실무상 의결사항: 필요한 자료, 정보, 외부 자문 비용 등 지원 요청	외부감사법 제22조 제5항 상법 제412조 제3항, 제415조의2 제5항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0조 제1항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유상증자, 사채 발행, 배당,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관련 대면 회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 회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⁹⁾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제4항 제3호 다목
보고 안건	회사의 대표자(또는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외부감사법 제8조 제4항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 감사결과, 부정 사안 등 보고 수령	외부감사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으로부터 내부통제시 스템의 적정성, 내부통제 상 이슈 등 보고 수령	상법 제542조의13 제3항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기타 보고 수령(자회사 감사결과, 법제도 동향 등)	상법 제412조의5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⁹⁾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제4항 제3호 다목

8) 삼성KPMG ACI, "Audit Committee Handbook 2018 2nd edition", p349, 2018.11

9)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간 대면회의 개최횟수·참석자·주요 발언 등에 대한 문서화가 의무화 되었으며 실무상 그 내용도 사안에 따라 의결안건 또는 보고 안건이 될 수 있음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본문은 회의체로써의 감사위원회 회의를 다루므로 감사는 해당되지 않음

체크리스트 · 템플릿

■ 감사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회의체 운영

- 회사의 여러 주요 안건들을 적시에 논의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이사회(감사위원회 포함)와 같은 회사의 주요 업무수행 조직의 유지와 원활한 운영이 요구됨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감사위원 등 일부 등기임원의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회사가 그러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사유로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유고시 권한위임사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감사위원회는 화상회의·전화회의 등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한 회의 진행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 다만 아래의 3가지 유형의 안전처리를 위해서는 관련법규에서 언급하는 강제사항으로 대면회의가 필요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외부감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¹¹⁾ 및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를 위한 감사위원간 대면 회의 개최¹²⁾,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간 대면회의 개최횟수·참석자·주요 발언 등에 대한 문서화가 의무화¹³⁾ 되었음
 - 금융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동영상 및 음성도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서 상호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보고 및 회의가 충실히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면회의 실시로 인정 가능함¹⁴⁾

10) 상법 제391조 제2항, 제393조의2 제5항 :이사회(감사위원회 포함) 결의 시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원격통신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11)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1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13)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3호 다목, 제5항 제1호.

14)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법령 개정 관련 FAQ 답변", 2019.1.28., 감사인 선임관련 FAQ 16

모범 기준

2.4 회의참석대상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 경영진, 재무담당 임원, 내부감사부서장 그리고 외부감사인 등에게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원칙적으로 감사위원만이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권한을 가지며, 특정회의에(또는 회의 일부에) 어떤 사람을 참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자 선정 및 회의운영 시 고려사항
 - 감사위원회 안건 중에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나 기타 감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사회 내 타 위원회 위원 및 사외이사, 경영진, 업무집행 담당 임원, 내부감사부서장, 외부감사인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 안건이 중요하고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위험관리자 등 회사 내부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이러한 외부인의 회의참여가 감사위원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제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본문은 회의체로써의 감사위원회 회의를 다루었으나, 감사도 회의 주재시 필요한 회의참석자를 선정할 수 있음

모범 기준

2.5 회의 빈도 및 소집권자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개별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함
 - 회의 개최시기는 재무보고 및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가 영향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회의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일정이 결정된 정기회의(대개의 경우 재무보고 안전과 관련)와 긴급하고 중요한 안전이 있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지만 긴급한 회의가 필요한 경우 개별 감사위원은 서면이나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본문은 회의체로써의 감사위원회 회의를 다루므로 감사는 해당되지 않음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I. 내부감사기구

- 1.5.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영국 재무보고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위한 가이드”에는 감사위원장이 회의횟수와 시기를 의사결정해 연간 적어도 3회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

UK FRC Guidance on Audit Committees

18 Meetings of the audit committee

It is for the audit committee chairman, in consultation with the company secretary, to decide the frequency and timing of its meetings. There should be as many meetings as the audit committee’s role and responsibilities require. It is recommended there should be no fewer than three meetings during the year, held to coincide with key dates within the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 cycle

모범 기준

2.6 회의록 작성 및 유지

감사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감사위원별로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¹⁵⁾을 작성하여야 함 (이사회내 위원회 준용)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법 제391조의3 제1항, 제2항 제393조의2 제5항 제415조의2 제1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 회의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감사위원들이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 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및 안건별 토의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토의된 중요한 안건에 관해서는 참석한 개별 감사위원별로 제시한 의견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법률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본문은 회의체로써의 감사위원회 회의를 다루므로 감사는 해당되지 않음

15) 회의록과 의사록은 기록문서 중 하나로서 어떠한 의제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두 문서의 쓰이는 상황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기록문서 중 하나인 의사록은 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많이 사용되며, 상법에서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의 주주라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 회의록은 주로 회사 또는 단체 등에서 회의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상법관계 이외의 것을 말하며, 회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I. 내부감사기구

1.6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모범 기준

2.7 회사 정보제공 및 지원

회사는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의개최 이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사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 감사위원회(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음 	법 제412조 제2항, 제3항 제415조의2 제5항,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소집시에는 최소 회의일의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음 	법 제390조 제3항, 제4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¹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함 해당 직무 수행 시 회사의 대표자에게 감사위원회(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음 	법 제22조 제3항, 제5항
금융사 지배구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함 	법 제18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함 	법 제20조 제1항, 제2항

16) 이하 이 책에서는 '외부감사법'이라 함

법규	내용 요약	조문
공공기관 운영법	• 기관장은 감사위원회(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해야 함	법 제32조 제6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가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회사 관계자가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 회의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감사위원회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회의 개최 전에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장 또는 외부감사인과 사전에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자료를 회의에 앞서 점검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회의자료가 회의 개최 전 개별감사위원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는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지원조직(또는 간사)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¹⁷⁾
 - 감사위원회를 지원할 지원조직의 장 또는 간사를 임명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이해상충 또는 업무집행 담당자로서 책임이 있는 자인지를 고려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의 협력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타 외부전문가로

17)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0조 제2항, 공공기관운영법 제32조 제6항.

부터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¹⁸⁾
-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운영예산 수립 시 외부전문가 활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함
-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자문의 배경, 내용, 비용,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그 효과를 정리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I. 내부감사기구

- 1.7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영국 재무보고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위한 가이드"에서 경영진은 감사위원회가 적절히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이) 요구하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이사회는 모든 임직원들이 감사위원회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는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덧붙여, 경영진들은 감사위원을 포함한 모든 이사가 이사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권함

18) 외부감사법 제22조 제5항.

UK FRC Guidance on Audit Committees

5 Introduction

In particular, the management is under an obligation to ensure the audit committee is kept properly informed, and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supplying information rather than waiting to be asked. The board should make it clear to all directors and staff that they must cooperate with the audit committee and provide it with any information it requires. In addition, executive board members will have regard to their duty to provide all directors, including those on the audit committee, with all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discharge their responsibilities as directors of the company.

모범 기준

2.8 회의 이외의 활동

감사위원회는 회의 이외에도 감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방문, 비공식회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감사위원들이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회의 이외의 활동도 지원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회사 경영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감사활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회의 이외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들은 경영진 없이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이해관계자와의 미팅 등 다양한 회의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현장방문은 감사위원들이 경영진이 준비한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감사위원들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경영상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또는 내부감사부서,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비공식적인 미팅을 수행할 수 있음

참고 규정

영국 재무보고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위한 가이드”에서는 1년에 적어도 한번은 경영진 없이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부서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권고

UK FRC Guidance on Audit Committees
21 Meetings of the audit committee

The audit committee should, at least annually, meet the external and internal auditors, without management, to discuss matters relating to its remit and any issues arising from the audits.

3 감사위원회 평가

모범 기준

3.1 원칙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위원회 평가결과는 감사위원의 보상 및 재선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금융사 지배구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감사)에 대한 평가가 강제됨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공공기관 운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회(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 	법 제36조 제1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활동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 도출 및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 됨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준수 여부, 감사위원회 규정의 적절성, 업무계획, 활동내용, 이해관계자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 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별 감사위원에 대한 평가가 아닌 감사위원회 수준의 활동에 대한 평가로 실시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 감사위원에 대한 평가도 수행할 수 있음¹⁹⁾

19) 주요금융그룹의 "2019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내부평가 및 동료평가를 통해 개별 감사위원에 대한 평가도 실시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파악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감사위원의 충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 평가 방식과 관련해 모든 회사 및 기관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없으나 적용 대상에 따라 아래의 평가 여부의 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여부와 평가하지 않았을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공시해야 하며, 이 내용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게도 적용됨²⁰⁾

참고 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① 대규모법인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별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 ⑥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20)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별표].

모범 기준

3.2 평가항목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 감독,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업무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포함하며 감사위원회 활동전반을 포괄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의 평가항목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경우 개별감사위원보다는 전체로서 감사위원회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평가항목 구분
 -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은 (1)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2) 재무보고 감독, (3) 외부감사 감독, (4)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감독 등의 평가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만,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음

**체크리스트 ·
템플릿**

■ 감사위원회 평가항목²¹⁾

1. 감사위원회 독립성

주요내용	평가 점수	만점 (7점)	의견
1. 감사위원은 경영진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적이며,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며, 이해상충 이슈가 없는가?			
2. 감사위원 선임 절차는 적절한가? (세부 점검 포인트 예: 회계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하고 있는가? 충분한 수의 후보군을 마련하는가?)			
3. 감사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술·경험·시간·자원을 갖추었는가?			
4. 감사위원회는 특정 감사위원에 너무 많은 의지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5. 감사위원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과 업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6. 감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정직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세부 점검 포인트 예: 사내 기밀사항 유지, 이해상충 자발적 해소 등)			
7.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 수준은 적절한가?			
8.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독립적인 법률·회계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금이 사내에 확보되어 있는가?			

21) Global KPMG ACI, "Audit Committee Handbook", p162-169, 2017

2. 감사위원 전문성

주요내용	평가 점수	만점 (7점)	의견
1.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역할·권한·책임, 위임사항, 기대되는 투입시간, 기업의 개요, 업종의 특성, 지원조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 받았는가?			
2. 회사 내부적으로 감사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전문성 교육은 내용이 충실하고 빈도가 충분한가?			
3. 감사위원은 회사 외부에서 제공되는 감사 직무 관련 교육에 참석할 기회가 보장되는가?			
4. 감사위원회 요청 시 외부감사인·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최근 사업연도에 실제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			

3. 재무보고 감독

주요내용	평가 점수	만점 (7점)	의견
1. 아래 사항을 감사위원이 시의적절하게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프로세스가 있는가?			
- 기업의 주요 회계정책/ 추정 / 판단			
- 재무제표 주석 사항의 정확성과 완전성			
-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기준 또는 회계원칙의 변경			
2.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의 절차나 내용에 대해 필요 시 이의제기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가?			
3.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업의 각종 재무자료에 경영진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해 재무 관련 안건을 승인하는가?			

4. 외부감사 감독

주요내용	평가 점수	만점 (7점)	의견
1.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세부 점검 포인트 예: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였는가? 외부감사인 후보 간 감사기간·감사보수·투입인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는가?)			
2. 선임된 외부감사인의 감사 투입인력은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3.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한가? 최근 사업연도에 실제로 외부감사인-감사위원회 간 공식·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었는가?			
4.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였는가? (세부 점검 포인트 예: 외부감사인의 고충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고자 노력하였는가?)			
5.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방식이 타당한가?			
6. 외부감사계획은 회사의 주요 감사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7.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 외부감사보고서의 품질은 적절한가?			
8. 감사수행 중 발생한 주요 이슈, 주요 회계 및 감사 판단, 부정 징후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였는가?			
9.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의 문의나 제언에 충실히 대응하도록 적절한 제도나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10.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가? 이러한 외부감사 품질 평가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감독

주요내용	평가 점수	만점 (7점)	의견
1. 감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책임이 경영진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에게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가?			
2.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성향(예: 위험추구, 위험중립, 위험회피)과 사내 리스크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있는가?			
3. 감사위원회는 재무리스크외에도 영역별 다양한 리스크를 감독하고 있는가? (예: 사이버보안을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가?)			
4. 감사위원회는 리스크파악·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가?			
5. 감사위원회는 각 리스크가 기업의 운영 및 재무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6. 거시환경 변화 등에 따라 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 및 리스크관리 체계(예: CRO 및 산하 조직)를 시의적절하게 변경 또는 조정하고 있는가?			
7. 감사위원회에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보고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8. 감사위원회는 매년 또는 매분기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성을 적절히 평가하는가?			
9. 감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체계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의견을 경영진에 주기적으로 전달하는가? 또한 경영진이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 감독하는가?			

모범 기준

3.3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평가는 설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매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을 권고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매년 자체(또는 자가)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국의 사례처럼 3년에 한번 정도는 공신력을 확보한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평가는 다양한 방식의 평가방법의 활용이 가능함
 -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설문조사나, 외부전문가와 의 인터뷰 그리고 감사위원회 내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 등이 활용될 수 있음

참고 규정

뉴욕증권거래소는 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이사회가 연 1회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감사위원회의 연간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함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7 Audit Committee Additional Requirements

(b) 감사위원회는 명문화된 규정에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ii) 감사위원회의 연간 성과평가

303A.09 기업지배구조 지침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지침을 채택하고 공시하여야 함. 동

지침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이사회 연간 성과 평가. 이사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과성을 진단하기 위해 최소 연 1회 자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위원회·위원장·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영국 상장회사 순위 350위 이상에 속하는 기업은 최소 3년에 1번 외부기관을 통한 이사회 평가를 받도록 권고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Provision 21

There should be a formal and rigorous annual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board, its committees, the chair and individual directors. **The chair should consider having a regular externally facilitated board evaluation. In FTSE 350 companies this should happen at least every three years.** The external evaluator should be identified in the annual report and a statement made about any other connection it has with the company or individual directors.

4 감사위원 보수

모범 기준

4.1 원칙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함	법 제388조 제415조
	•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함	법 제542조의12 제5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은 상법상 회사의 이사로서 주주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필요함
 - 상법상 감사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며, 월급과 상여금 등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됨

- 그러나 감사위원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으로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I. 내부감사기구

1.9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모범 기준

4.2 보수산정기준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은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 보수 산정 시 감사위원이 업무수행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함
 - 감사위원인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업무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투입한 시간을 고려하여 다른 이사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외부감사법 개정 등 법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법적 책임은 타 위원회보다 커졌음
 - 감사위원은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감사위원 보수 산정 시 감사위원이 부담하는 법률적 위험을 고려하여야 함

참고 규정

영국 재무보고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보수가 타 위원회보다 높은 근거를 제시함

UK FRC Guidance on Audit Committees
27 Remuneration

Audit committees have wide-ranging, time-consuming and sometimes intensive work to do. Committee members - and particularly the audit committee chairman - bear a significant responsibility and they need to commit a significant extra amount of time to the job.

사례 예시

- 영국 상장회사 순위 100위 기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 보수가 상위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음²²⁾

22) KPMG UK Board Leadership Center, "Guide to Directors' Remuneration", 2017.12

모범 기준

4.3 보수결정권한

감사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이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감사위원별로 투입시간, 업무내용, 책임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가 있는 경우 보상위원회가 감사위원의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함	법 제388조 제415조
	•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함	법 제542조의12 제5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 실무상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총액 또는 상한액을 결의하고, 결의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개인별 감사위원의 보수를 결정함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경영진이 감사위원의 보수를 정하거나 정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정하여야 함
 - 주주총회 또는 정관의 결의가 없는 한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²³⁾

2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보수는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상위원회는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설계하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이사회내 위원회이므로 보상위원회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보상정책에 따라 감사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준용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짐
 -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해야 함

모범 기준

4.4 보수지급유형 및 범위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월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 주식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편익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음 상장회사의 경우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과 감사에게도 부여 가능 	<p>법 제340조의2 제1항, 제2항 제542조의3 제1항</p> <p>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상장회사인 경우 100분의 15)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부여 가능(단, 부여 후 첫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함) 	<p>법 제340조의2 제3항 제542조의3 제2항, 제3항</p> <p>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4항</p>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동

-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됨
 -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퇴직금,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며²⁴⁾, 해직 보상금에도 유추 적용됨²⁵⁾
 - 감사위원에게 회의참여 등 활동별로 지급되는 수당, 감사위원장 등 직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수당, 업무추진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 제공, 사무실 제공 등 감사위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편익도 감사위원 보수에 포함됨
-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에 대해 보수로서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 신중해야 함
 - 회사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²⁶⁾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그러나 감사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회사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위원인 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하는 것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
 - 법률에서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위원의 업무를 고려하여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수를 책정해야 할 것임

2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2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26) 현재,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3천억 원 이상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이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5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

모범 기준

5.1 원칙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외부감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동규정 위반 및 사후조치에 관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함 	법 제8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이 기존에 감사업무와 관련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회사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강화된 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음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및 사후조치에 관하여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의 내용을 추가²⁷⁾
 - 교육을 통해 감사위원(감사)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동 실적은 사업보고서²⁸⁾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공시되어야 함

27) 내부회계관리제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을 강제하는 규정이 최초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임

28)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7-2-1조, 제7-2-2조 제5호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 이사회

7. 이사의 책임

7.4 이사는 주기적으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사내·외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선임 이사는 직무 및 지배구조 관련 교육에 참가할 것을 권고한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는 이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언급하고 있음.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공시해야 하며, 이때 이사의 입문교육(Orientation)과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함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9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No single set of guidelines would be appropriate for every listed company, but certain key areas of universal importance include director qualif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responsibilities of key board committees, and director compensation.

The following subjects must be addressed in the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 Director orient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영국 재무보고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위한 가이드”에서는 신규 감사위원을 위한 입문교육과 재직중인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권고함. 회사는 신규 감사위원에게 입문교육(Induction Program)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입문교육에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에 대한 개요, 금융리스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함을 언급함. 또한, 재직중인 감사위원에게 지속적으로 시기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역할, 리스크관리 등을 포함한다고 언급함

UK FRC Guidance on Audit Committees

16 Skills, experience and training

The company should provide an induction programme for new audit committee

members. This should cover the role of the audit committee, including its terms of reference and expected time commitment by members; and an overview of the company’s business model and strategy, identifying the main business and financial dynamics and risks. It could also include meeting some of the company staff.

17 Skills, experience and training

Training should also be provided to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on an ongoing and timely basis and should include an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and developments in corporate reporting and regulation. In appropriate cases, it may also include, for example, understanding financial statements, applicable accounting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company’s business; the role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ting; and risk management.

사례 예시

■ 감사위원회 교육정책 및 교육내용 예시²⁹⁾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은 신입 감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입문교육과 재직중인 감사위원에게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 교육주체는 당사 내부 부서, 전문 위원회, 외부전문기관 등이 있으며, 그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내역은 교육 일시, 교육 시간,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출석 여부 등의 사항을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합니다.

교육 일시	교육 시간	교육 주제	교육 내용	감사위원별 출석 여부			
				강○○	안○○	임○○	이○○
0000.00.00	3시간	...	감사위원의 책임				
0000.00.00	2시간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0000.00.00	1시간	...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0000.00.00	3시간	...	0000년 사업계획 및 전략				
0000.00.00	4시간	...	핵심감사제에 대한 이해				
0000.00.00	1시간	...	감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누적 교육 시간							

29) 삼성KPMG ACI, "Audit Committee Handbook 2018 2nd edition", p443, 2018.11

모범 기준

5.2 교육유형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은 감사위원 선임 후 제공되어야 하는 입문 교육과 감사위원 업무수행 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회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입문교육: 신규 선임 이후 감사위원(감사)으로 하여금 기본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 보수교육: 재직중인 감사위원(감사)로 하여금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주요 경영 이슈를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 이해를 돕는 교육

사례 예시

■ 감사위원회 입문교육과 보수교육³⁰⁾

구분	입문교육	보수교육
제공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 신규 선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 재임 중
주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의 법적 권한과 책임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해 • 재무보고 감독을 위한 회계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위원회(감사)의 역할 • 외부감사 감독 • 감사부설기구의 지원 •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운영(감사의 활동)을 위한 전략 • 기업의 위험관리와 감사위원회(감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및 감사기준 업데이트 • 주요 감리 지적 사례 •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 이사회 및 타 위원회의 업무 조율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및 사후조치 • 위험기반 감사방법론 • 외부감사인인 감사방법론 • 감사위원회 운영 해외사례 • 산업별 세션

30) 삼성KPMG ACI, "Audit Committee Handbook 2018 2nd edition", p444-445, 2018.11

모범 기준

5.3 교육내용

감사위원의 입문교육은 감사위원회 업무내용 및 역할과 책임 그리고 회사의 경영환경, 주요이슈 등 감사위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며, 기존 감사위원의 보수교육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선임된 후 다음과 같은 교육이 필요함
 - 감사위원이 신규로 선임되면 회사경영 전반 사항 파악을 위해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사내 입문(Orientation)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
 - 감사위원회 규정, 이사회에 전달한 최근 회의록 및 관련자료
 - 최근 연간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 내부신고정책을 포함한 회사정책
 - 리스크 프로파일
 - 재무보고의 내부통제 유효성에 관한 경영진, 감사인 보고서
 - 최근 보도자료, 보안 규제기관 또는 규제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 내부감사규정, 업무계획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최근 보고서
 - 주요 회계정책, 소송을 포함한 현재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
 - 재무보고를 논의하기 위한 경영진과의 회의
 - 회사의 경영환경의 변화나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수행 중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권장됨
 - 중요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 브리핑
 - 회계 및 감사기준 업데이트
 - 감사방법론
 - 기업의 리스크관리
 - 감사위원회 운영 국내외 우수사
 - 산업별 세션 (예: 디지털 변혁과 감사위원회 역할)
 - 외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는 컨퍼런스 참석((사)감사위원회포럼 정기포럼 등)³¹⁾

31)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Big4 회계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면·비대면 교육을 제공중에 있음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1 직무와 권한

모범 기준

1.1 주요 감사업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내부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과 주주총회에의 사후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 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감사)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함(업무감사) • 감사위원(감사)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해야 함(회계감사) 	법 제412조 제1항, 제447조의4, 제415조의2 제7항, 제542조의12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감사)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 감사위원(감사)은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해야 함 	법 제391조의2 제2항, 제413조, 제415조의2 제7항
외부감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 수령, 평가, 평가결과 및 시정의견 보고 등 	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을 선정함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추후 감사보고서 수령시 그 준수여부를 확인함 	법 제10조 제4항, 제5항,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조사 및 시정요구를 하고, 그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 사실 발견시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법 제22조
자본시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시장치(내부감사부서 포함)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업보고서에 첨부해야 함 	법 제159조 제2항 시행령 제168조 제6항 제3호

법규	내용 요약	조문
공인회계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인 비감사 영역에 대하여 협의하고 필요시 동의함 	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4조 제4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우리나라의 법제는 감사위원회(감사)에게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감사)의 업무 중 특히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가 감사 업무의 주요 내용임
- 전원 사외이사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의 경우 일상적인 감사에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등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특히 감사위원회(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임

 -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에의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임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Ⅲ.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내부 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내부 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의 사후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규정 또는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모범 기준

1.2 권한사항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회사 내 관련 정보에 대한 사항
-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보고요구권이 있음 •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조사권이 있음 	법 제412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¹⁾이 있음 	법 제402조 제415조의2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소집청구권이 있음 	법 제412조의4 제415조의2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이 있음 	법 제391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 업무·재산상태조사권이 있음 	법 제412조의5 제1항, 제2항 제415조의2 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권한이 있음 	법 제449조의2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권한이 있음 	법 제412조 제3항 제415조의2 제5항

1)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이란,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 설립무효의 소 제기권이 있음	법 제328조 제1항
	•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기권이 있음	법 제360조의14 제1항
	• 주식이전무효의 소 제기권이 있음	법 제360조의23 제1항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제기권이 있음	법 제376조 제1항
	•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권이 있음	법 제429조
	• 감자무효의 소 제기권이 있음	법 제445조
	• 합병무효의 소 제기권이 있음	법 제529조 제1항
	•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대표권이 있음	법 제394조 제1항 제403조 제1항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 있음	법 제412조의3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이 있음 (감사만 적용)	법 제409조의2	
외부감사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 요청 권한이 있음	법 제8조 제5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음	시행령 제9조 제3항
	•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이 있음 • 외부감사 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사항 결정권이 있음	법 제10조 제4항, 제5항
	• 외부감사인 해임 요청권이 있음	법 제13조 제2항
	• 회계부정 조사 및 시정 요구권이 있음 • 회계부정 조사 관련 회사의 지원 요청 권한이 있음	법 제22조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감사)는 기본업무인 업무감사, 회계감사 수행을 위해 위와 같이 다양한 권한을 가짐
-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고 요청권은 필수적인 권한이며, 이에 대한 기업 내 모든 부서에서의 전적인 협력이 필요함
 - 감사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의 행사절차, 권한범위, 적극적 협력의무, 예외적 거부사유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감사위원회(감사) 업무보조를 위하여 상시 운영되는 실질적인 감사업무 담당자인 내부감사부서의 요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부서의 협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 문화를 개선하여야 함

모범 기준

1.3 감사위원의 직무수행

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 회사와 이사 및 회사와 감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법 제382조 제2항 제415조
민법	• 이사와 감사는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함	법 제681조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은 이사로서의 직을 겸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사가 위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감사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함
- 감사위원(감사)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의 확보 및 유지 관리, 감사직무 수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시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증거 처리 및 감사직무 관련 명문화된 규정 제정, 담당자(담당조직) 지정 등이 있으며, 회사의 내부통제 또는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연계할 수 있음

모범 기준

1.4 공정성

감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및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법 제368조 제3항 제391조 제3항 제393조의2 제5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기반으로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개별 감사위원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함
 - 감사위원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외부의 채권자, 은행, 소액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사위원은 스스로 회사와 이해관계 충돌이 없어야 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
 -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는 이사회나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감사 또한 스스로 회사와 이해관계 충돌이 없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

모범 기준

1.5 의무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 감사위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충실의무)	법 제382조의3
	• 감사위원 및 감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회사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비밀유지의무)	법 제382조의4 제415조
	• 회사와 이사 및 회사와 감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법 제382조 제2항 제415조
민법	• 이사와 감사는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함(선관주의 의무)	법 제681조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은 이사의 직을 겸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가짐
 - 이사로서 위임관계에 의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 상법상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예시할 수 있음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이사에게 적용되는 의무 중 충실의무는 감사에게 준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나, 학설상 감사위원과 감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규정상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 내용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임²⁾

2) 권종호, "감사법제 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p118, 2014

모범 기준

1.6 책임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법 제39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이 고의·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 제3자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법 제40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감사가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할 경우 제3자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법 제4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경우 면제됨(적극적 책임면제) 	법 제400조 제1항 제415조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책임 사유가 기재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정기 총회에서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가 감사위원(감사)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봄(소극적 책임면제) 감사위원(감사)의 부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법 제45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감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음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법 제400조 제2항 제415조

법규	내용 요약	조문
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감사)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상법상 책임과 별도로 인정되는 책임임 	법 제750조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은 이사로서의 직을 겸하므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로서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감사 또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함
 - 감사위원(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 정관 규정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면제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또한 이사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감사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범죄행위 등 제외) 그 책임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 감사위원(감사)은 상법과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 책임이 제한·면제된 경우에도 민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한편 감사위원(감사)은 민사상의 책임 외에도 징역, 벌금 등 형사상의 책임을 지거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시 이를 유의하여야 함
 - 특히 전부개정된 현행 외부감사법은 내부감사인내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함

〈표Ⅳ-1〉 감사위원(감사)의 활동과 관련한 주요 형사처벌규정(예시)

법규	규정
외부감사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상법	특별배임죄(제622조 제1항),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제625조), 독직죄(제630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죄(제631조),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제634조의2)
형법	업무상횡령죄(제356조), 업무상배임죄(제356조), 배임수증재죄(제357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이득액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가중처벌 (제3조)

참고 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³⁾

VIII. 감사(감사위원)의 책임구분

-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대상은 원칙적으로 상근 감사(감사위원)로 하되, 상근직이 없거나 실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상근직에 대한 조치가 부당한 경우로서 해당 비상근 감사 또는 비상근 감사위원의 직무소홀이 큰 경우 비상근 직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협의체 특성 등으로 인해 감사위원의 개별적 책임 구분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감사위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 나. 감사(감사위원)는 회사의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감사위원)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또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3) 본 기준은 감독당국의 감리·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조치양정을 위한 기준임

다. 감사(감사위원)의 위법동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되,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회계 관련 감사(감사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정도에 따라 중과실 또는 과실로 본다. 다만, 외부감사인인 감사(감사위원회)에게 내부통제 취약 또는 특정항목에 대한 이상징후 경고(warning letter) 등을 보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업무 소홀로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법동기를 중과실로 본다.

라. 감사(감사위원)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보되, 감사(감사위원)의 위법행위 적극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 또는 내부통제절차의 중대한 결함 방치 등 중대한 감독 소홀의 경우에는 회사와 위법행위의 중요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감사(감사위원)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에 더하여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고발등을 할 수 있다.

마.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이 미흡하거나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병행할 수 있다.

사례 예시

- 감사위원(감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 이사의 의무 위반이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경우,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선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⁴⁾
 -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여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판시함

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 실질적 활동 없이 명목상으로만 사외이사로 등재되어있고 보수도 받지 않은 것은 분식회계에 대한 사외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고려요소가 아님⁵⁾
 - 해당 사건은 분식회계에 대해 사외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서 유의미함
- 감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감사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활용하여 감사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중요한 경영 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이 제한되고 감사에 의한 사전결재시스템이나 사후보고시스템 등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감사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현격히 가중됨⁶⁾
 - 위의 판결에서 감사에게 적용된 법리와 동일한 법리가 감사위원에게도 적용됨
- 최근 가장 큰 분식회계 사건 중 하나인 D사 분식회계 사건에서, 전 감사위원 10명이 대규모 회계분식을 인지하고서도 내부감사인의 의무를 방기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바 있음⁷⁾

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7) 청년공인회계사회

모범 기준

1.7 감사체계의 수립

감사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제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체계는 감사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 그 필요성은 절대적임
 - 체계적으로 작성, 관리되는 감사체계에 의한 감사직무의 수행은 모든 감사업무 수행 결과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임
- 연간 감사위원회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한정된 자원 및 시간 내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성을 확보해야 함
- 내부감사부서는 감사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함
 - 내부감사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위험에 기반을 둔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함⁸⁾
 - 감사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어떻게 조직의 모든 부서와 프로세스가 감사할 것인가?
 - 어떻게 감사자원을 사용할 것인가?⁹⁾
 -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은 어떻게 선정하고 감사할 것인가?
 - 리스크가 특히 높은 영역은 감사 초기에 논의하고, 그 후 감사 순환주기 중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국제내부감사기준 문단 2010(IIA).

9) 통산 연일수(man days)로 기록

- 전년도에 완료된 업무와 내년도에 수행예정인 업무를 충분히 고려하여 연간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은 내부감사 시기와 우선순위에 있어 다른 견해를 가질 경우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함

사례 예시

- 감사체계의 수립 시 국제내부감사인협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내부감사직무수행 원칙¹⁰⁾을 고려할 수 있음

핵심적인 내부감사직무수행 원칙

무결성을 증명한다.
 역량을 갖추고, 정당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함을 증명한다.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객관적(독립적)이다.
 조직의 전략, 목표 및 리스크와 정렬된다.
 적절하게 조직 내 지위가 정해지고, 필요한 자원이 공급된다.
 품질 및 지속적인 개선을 증명한다.
 효과적으로 소통한다.
 리스크기반 확신(Assurance)을 제공한다.
 통찰력이 있고, 사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조직의 개선을 촉진한다.

10) Core Principles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Internal Auditing

모범 기준

1.8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이 장에서 제시된 주요 감사 업무 등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에 맡겨진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단순히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감사위원회에 맡겨진 법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감사활동 관련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총괄 지휘하여야 함
- Global KPMG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¹¹⁾

구분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할
감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설정 •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 이사회 및 타 위원회와의 조화와 협조 • 경영진과의 협력 • 감사위원회의 지속적 개선 강조 • 감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다양성 확보 • 리더십 발휘
감사위원회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와 리스크에 대한 이해 •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 설정

11) Global KPMG ACI, "The role of the audit committee chair", 2017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감사는 회의체가 아니므로 위원장 관련 해당사항 없음

사례 예시

-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는 2020 한국 기업에 대한 의결권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1년에 감사위원회를 4회 미만 개최한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고 있음¹²⁾

AUDIT COMMITTEE PERFORMANCE

When assessing the decisions and actions of the audit committee, we typically defer to its judgment and recommend voting in favor of its members; **however, we will usually recommend voting against the following member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audit committee chair, if the audit committee did not meet at least four times during the year;

12) Glass Lewis, "2020 Proxy Paper Guidelines Korea", 2020

2 재무보고

모범 기준

2.1 재무보고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에의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실적 예측정보의 정합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감독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상장회사 등 주요 기업의 회계정보는, 물론 기업 내부에서의 이용 목적도 크지만 해당 회계정보의 수요자가 기업 외부에도 많이 존재함
 -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 외부감사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함
 - 회사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발표한 재무제표나 재무보고서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 투자한 회사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 은행에서 회사에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재정상태나 대출 후 경영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싶을 때
 - 정부 기관에서 민간기관에게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등
 -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또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서 소속 산업분야에 큰 영향을 주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라면 우리 자본시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업의 회계정보의 정확성 여부는 일정정도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음

▪ 재무보고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분류	본문
재무제표 제출 및 감사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상 이사 또는 대표자는 감사위원회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일의 6주간 전에 제출¹³⁾해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이를 검토함 • 또한,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전달 받은 날부터 4주 이내¹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함¹⁵⁾ ▶ 세부설명은 [VI.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1.2 감사결과의 이사회 보고]에서 다룸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능력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상 이사(또는 대표자)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함¹⁶⁾ •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거나,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직권 지정할 수 있음¹⁷⁾ ▶ 세부설명은 [V. 외부감사인과의 관계-2.2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점검]에서 다룸
주요 회계정책 및 회계처리 절차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¹⁸⁾가 포함됨 ▶ ‘회계기준’과 관련한 세부설명은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2.2 회계기준의 타당성 평가]에서 다루고 ‘회계처리 절차’를 주로 다루는 부분은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2.1 재무보고]에서 다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¹⁹⁾ ▶ 세부설명은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4.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에서 다룸

13) 상법 제447조의3.

14) 상법 제542조의12 제6항: 상정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제출 가능

15) 상법 제447조의4 제1항.

16) 상법 제447조.

17) 외부감사법 제6조 제6항, 제11조 제1항 제5호.

18)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1.3

19) 외부감사법 제8조 제4항, 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분류	본문
부정조사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의 주된 책임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에 있으며, 특히 최고 경영진에 의한 부정 예방과 적발 책임은 감사위원회에 있음²⁰⁾ 감사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 조사하고 회사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함²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설명은 [VI.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1.3 이사의 부정행위 등의 보고]에서 다룸
내부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신고제도 실효성 확보를 통한 분식 예방효과 및 분식 발생 시 조기 적발을 촉진하기 위해 강화된 조치임 내부회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이 명문화²²⁾되었고 내부신고자에 불이익을 주는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음²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설명은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3.1 내부신고]에서 다룸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성격상 일반 거래보다 더 높은 재무제표 왜곡 표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위험을 정확히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특수관계자와의 중요 거래가 적절한 승인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실적예측치의 정합성

- 회사가 발표하는 실적 예측치와 재무분석가나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는 재무정보 및 이익 예측치 등의 정합성을 감독하는 것도 감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됨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변경된 회계정책으로 인한 실적예측치 변동 등의 주요 이슈를 감독하고 정보이용자에 대한 한계사항 고지 여부를 확인함

20) 외부감사법 제22조.
 21) 외부감사법 제22조 제3항.
 2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다목.
 23) 외부감사법 제28조 제4항.

-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이러한 실적예측정보와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함²⁴⁾
- 비경상적인 거래나 회계처리 관련 감사위원회의 감독사안²⁵⁾
 - 감사위원회는 비경상적 거래²⁶⁾ 또는 회계처리와 관련한 감독을 수행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에의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뉴욕증권거래소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재무분석가 및 신용평가기관에 제공되는 상장회사의 재무정보, 실적예측 등을 감사위원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함

NYSE Section 303A.

7(c) **The audit committee must have a written charter that address:**

(iii)(C)

discuss the listed company's earnings press releases, as well as financial information and **earnings guidance** provided to analysts and rating agencies;

24) NYSE Section 303A.7(c)(iii)(C)

25)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22, 26, 47, 2018

26) 기업의 주요한 영업활동 관련 부수적인 활동과 관련한 거래

**체크리스트 ·
템플릿**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감사위원회의 감독²⁷⁾

- 특수관계자 거래를 승인하는 프로세스 관련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사항
 - 특수관계자 거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는가?
 - 상기의 프로세스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 특수관계자 거래를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해 특별회의를 소집할 것인가?
 -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 상기의 정보는 누가 제시하여야 하는가?
- 특수관계자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사항
 - 사업상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이러한 근거는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 및 목표와 부합되는가?
 - 동 거래가 공시되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동 거래의 결과로 혜택을 입는 내부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
 - 동 거래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동 거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가?

■ 실적예측정보의 정합성 관련 감사위원회의 감독²⁸⁾

- 실적예측정보 등의 검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이익 예측치를 제공하는 방식을 경영진이 마지막으로 검토한 것이 언제인가?
 - 최근의 경제상황이나 기타 회사가 직면한 환경을 고려할 때 그 방식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가?

27)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p88, 2019

28)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p88, 2019

- 단기 실적 예측치를 달성하려는 압박이 회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이익 예측치나 미래전망정보와 관련하여 경쟁사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 경영진이 주당순이익 목표 등 미래 추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동인은 무엇인가?
- 이러한 동인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정보는 무엇인가?
- 주주들로부터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미래 전망정보의 유형에 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할 것을 경영진이 고려하였는가?
-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가 이익 예측치나 기타 미래 정보를 검토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비정상적인 거래나 회계처리 관련 감사위원회의 감독²⁹⁾

- 비정상적인 거래나 회계처리 관련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감사위원회(감사)는 경영진이 회사의 모든 주요 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평가절차에서 누락될 수 있는 회사의 비정상적인 활동은 유의한가?
 - 회사에 중요한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계약 조건 등의 회계 정보의 위조, 변조 및 훼손 사례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비정상적 거래를 식별을 위해, 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 활동과 기업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의적인 소유자에 대한 정보 조회를 실시하였는가?
 - 비정상적인 거래의 추세 또는 패턴을 모니터링 하였는가? (거래별 예외처리 건수)

29)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22, 26, 47.

■ 감사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코로나19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예시³⁰⁾

구분	설명
경기 전반	• 급격한 환율·금리 변동 등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제조환경	• 사업장, 공장 폐쇄 등 생산활동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량품 및 반품에 대한 회계처리
재고자산	• 매출둔화로 인한 재고자산의 장기체화, 판매 촉진을 위한 저가 판매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
금융자산 손실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상품(지분증권, 채무증권)의 평가손실
계속기업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매출감소의 장기화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계속기업 가정이 불확실해질 수 있음 • 요구되는 자본 및 신용거래와 관련한 현금흐름 부족 및 제약 사항 • 매출감소로 인한 회사 운영활동의 축소 또는 임시 정지 • 차입금 상환능력 또는 연장가능 여부 등 고려 •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자산의 충분성 • 중요한 공급 부족 • 시설 폐쇄 및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채권 부실화	• 채권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거래처 신용위험 증가
자산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동률 저하로 인한 영업용자산(유·무형자산 및 영업권) 손상 • 해외 자회사(특히 코로나19 창궐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에 대한 주식 손상
계약불이행	• 각종 거래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계약상 면책 조건, 보험 커버리지, 총당부채 설정여부의 적정성 검토)
재무제표 지연제출	• 관련 주요 인력(재무인력 등)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력 이탈시 재무제표 지연제출이나 부실 작성 가능성

30) KPMG Global, "How audit committee and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can respond to COVID-19", 2020

모범 기준

2.2 회계기준의 타당성 평가

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은 정확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므로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는 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임
 -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특성(사업분야, 사업방식, 사업규모)에 적합한 회계기준이 선택·적용되었는지를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함
- 회계변경은 기업회계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회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계속기업 가정이 적절히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함³¹⁾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지속적인 협의 및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잠재되어 있는 재무 이슈에 대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와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함

31)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부터 2017년 12월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며, 계속기업가정 검토는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부터 먼저 적용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부터는 전체 상장법인에 적용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은 정확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변경은 기업회계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회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크리스트 · 템플릿

■ 주요 회계처리기준 감사위원회의 감독³²⁾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제·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했는지 확인하였는가? •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재무보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회계기준뿐 아니라, 최근의 주요 이슈 항목 및 감독당국의 강조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감사위원회(감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 분석결과에는 동종 산업 내 유사기업의 회계정책과 유의적인 차이점을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해외 사업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국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책 및 절차 관리 활동까지를 감독해야 함을 인지하였는가?

32)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p59-60, 2018

■ 계속기업 가정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감독³³⁾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구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상 계속기업 전제 사용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재무제표 관련 공시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함 • 예상현금흐름에 대해 적절한 고려가 필요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함 • 초기 예산이나 예상 범위를 넘어 발생할 수 있는 이슈평가를 위해 예상현금흐름의 기간 확대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경영진의 신규 자금 확보나 자금 지원 능력을 보여주는 정보를 확인해야 함

3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서 570 개정안", 2017

모범 기준

2.3 회계 및 재무기능의 평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재무기능 담당부서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회계 및 재무기능을 총괄하는 경영진이 적절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생성하여 공시하기 위해서는 회계 및 재무기능의 충분한 전문성, 자원 및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함
 -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 및 재무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규모를 최소 매년 산정하여야 함
 - 회계 및 재무기능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규모를 고려한 후, 회계 및 재무기능의 구조, 문화, 전문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감사)는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회계담당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현황 내용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용을 대면보고 받아 '회계 및 재무기능'(예: 재무조직)의 회계역량을 감독해야 함
 - 경영진 관련
 - 경영진이 감사 이슈 및 신규 적용 회계기준 이슈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지의 여부
 -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을 위한 회사의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여부
 -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신고제도의 관리·운영 여부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 회사 재무조직 또는 회계담당자의 역량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지 여부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의 인지 여부 확인 및 외부감사법 준수 여부 확인

〈표Ⅳ-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³⁴⁾ 중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양식

직책 (직위)	성명	전화번호	회계담당자 등록	경력		교육실적	
				근무연수	관련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 관리자							
회계담당 임원							
회계담당 임원							

체크리스트 · 템플릿

■ 회계 및 재무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고려사항³⁵⁾

-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항목
 - 회계 및 재무기능에서 활용하는 전체 인원은 몇 명인가?
 - 관리자급 및 비관리자/임시직/계약직 간의 인원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 전체 처리비용 추정치는 얼마인가? (인건비 및 외주비용 포함)
 - 거래 처리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재무보고, 결산과 관련해서 입수할 정보
 - 회계 및 재무 기능 내의 내부통제를 검토하기 위해 입수할 정보
 - 사업계획 수립 시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구조, 문화, 전문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항목
 - 회계 및 재무기능의 경영철학과 운영 스타일이 건전한 통제환경과 일관되는가?

3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3호.

35)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p78-79, 2017

- 회계 및 재무기능의 조직구조는 건전한 통제환경을 도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 책임추적성과 통제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도록 회계 및 재무기능의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부여되어 있는가?
- 회계 및 재무 기능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적절한 회계 원칙을 적용하는가?
- 재무보고와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가?
-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를 경영진으로부터 입수하고 또 경영진에 보고하는가?
- 경영진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가?

3 내부신고

모범 기준

3.1 내부신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신고에 대한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외부감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회계 관련 부정행위 등을 신고·고지받은 자는 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함 회사는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됨 	법 제28조 제2항,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10억 원임 	법 제28조 제5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 조치의 방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갖출것이 명문화됨 	법 제8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다목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동

- 내부신고자의 보호는 해당 기업 전체의 신뢰성과 명성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주요사항임
 -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내부신고자에 대한 이른바 배신자 낙인찍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이러한 기업문화와 인식 하에서는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부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따라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신분적 안정성 등이 보장되도록 감사위원회(감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감사)는 내부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와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음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감사, 감사위원회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내부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³⁶⁾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³⁷⁾
 -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³⁸⁾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³⁹⁾
- 내부신고시스템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감사)는 경영진이나 내부감사부서와 협력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내부신고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가 있는지 여부
 - 내부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
 - 내부신고 채널을 홍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부
 -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재무제표 부정 등 잠재적인 범죄를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36) 외부감사법 제41조 제5호.

37) 외부감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38) 외부감사법 제43조.

39) 외부감사법 제47조 제1항 제2호.

- 경영진의 권한남용 및 통제 무시(management override) 위험 등에 대한 적절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 있음⁴⁰⁾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반적인 5가지 구성요소(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와 각 구성요소별 원칙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고,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및 중간관리자와 일반 직원 등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됨⁴¹⁾
- 감사위원회는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신고제도 유효성을 점검하고 동 제도를 통해 제보가 접수된 경우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적절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표Ⅳ-3〉 내부신고제도와 관련한 신고자 관점과 감사위원회 역할

구분	신고자 관점	감사위원회 역할
익명성	익명성 보장 미비에 따른 보복의 두려움	내부신고제도의 익명성 보장 정책 점검
보상	제보에 뒤따른 부담에 대한 경제적 보상 희망	신고된 건의 경중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수립
사후처리	신고한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	접수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수행 및 사후처리

40)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14, 2018

4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15, 2018

금융당국 보고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20.3.18) 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 2020.3.24.)」

■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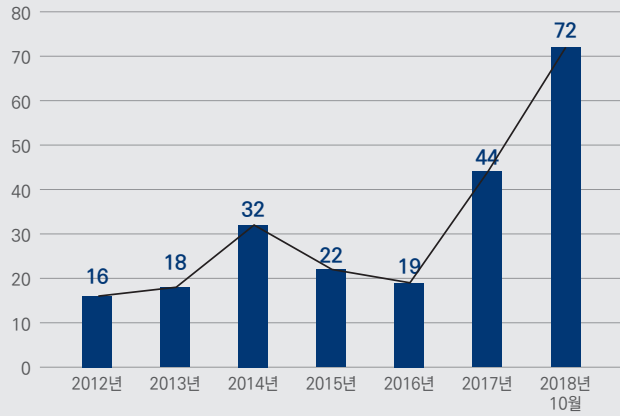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함
 -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존재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도 불공정행위·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 중
- 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익명 신고도 가능함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
-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최근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여 회계부정신고가 급증하는 추세(금융감독원, 2018.12.4.)」

■ 회계부정 신고 접수 현황

- 2017년과 2018년에 신고건수의 가시적인 증가가 관찰되나 지급된 포상금 총액의 경우 2014년 1,140만 원, 2016년 2,430만 원에 불과함
 - 2016년에 접수된 건수(19건)와 2018년 초부터 10월까지 접수된 건수(72건) 비교 시 2년간 4배 증가

〈그림Ⅳ-1〉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신고 접수 추이



**체크리스트 ·
템플릿**

■ 내부신고제도 점검 체크리스트⁴²⁾

감사(위원회) Check Point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신고 사항의 검토 및 해당 신고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 문단 9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신고제도 등의 부정 방지 프로그램 관련 역할, 책임, 위임 관련 내용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신고자, 내부신고제도 등의 부정 방지 프로그램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조직 또는 내·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필요 시 비공개로) 검토 및 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감독 수행 시, 내부신고제도 등의 부정 방지 프로그램 등에서 얻은 정보를 고려 재무제표 오류, 비경상적인 거래 및 추세 등에 대한 내부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 과정 및 결과, 특히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취해져야 할 후속조치가 적절한지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26

42) 삼성KPMG ACI, "Audit Committee Journal Vol.12", p19, 2019.10

■ 내부신고제도 점검 체크리스트⁴²⁾ (계속)

감사(위원회) Check Point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보고 수령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신고제도의 의의, 대상이 되는 항목, 조사 절차, 조치 및 보고절차와 익명성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사내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외부 관계자 대상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신고 처리 과정 중 또는 사후적으로) 내부신고자 비밀 누설이나 불이익 처우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시 경영진에 시정조치 요구 	외부감사법 제41조 제5호, 제43조, 제47조 제1항

사례 예시

■ 내부신고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⁴³⁾

- 외부의 제3자가 내부신고시스템을 운영
- 자동화된 시스템을 지향하고 훈련받은 인력을 상담 담당자로 배치
- 웹사이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른 수단과 함께 24시간 접속 가능한 전화번호 제공
- 다국어 지원 시스템과 담당자
- 최초 신고 이후 재연결 가능 및 익명의 신고기능 구현
- 보복 등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의 보호
- 신고자의 정보 등에 관한 비밀 유지 및 신속한 처리절차
- 모든 임직원, 공급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 잘 알려진 신고절차
- 담당자에게 신고를 연결하고, 경영진이 연루된 제보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수단제공

43)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p121, 2019

4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모범 기준

4.1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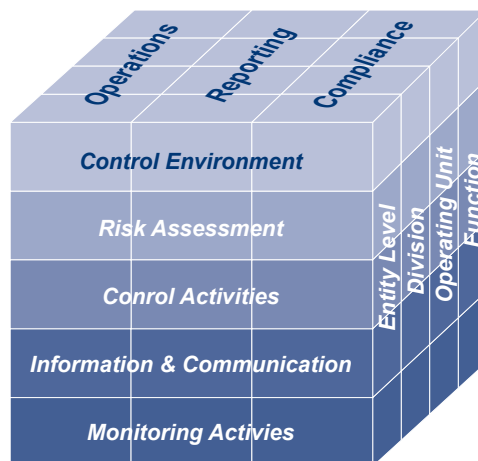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의무이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 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는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등의 문서에서 내부통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⁴⁴⁾
 - 운영활동의 실효성과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적용 가능한 법·규제의 준수 등 달성을 위해 이사회, 경영진 및 기타 주체들이 실행하는 절차

〈그림Ⅳ-2〉 COSO Framework의 내부통제 목적, 구성요소, 조직구조 개념도



44) COSO,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p1, 2013.5

- COSO에 따르면 내부통제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음
 - 통제 환경(Control Environment): 내부통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분위기(문화)를 설정하며, 다른 요소들의 기반이 됨.
 - 직원들의 신의성실성, 윤리적 가치와 경쟁력, 경영진의 철학과 영업 스타일, 경영진의 직원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 배분, 조직 및 발전 방식, 이사회가 제공하는 주의와 방향을 포함
 -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목표 달성과 관련된 리스크 판별과 분석. 리스크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지 결정하는 기반이 됨
 - 통제 활동(Control Activities): 경영진의 지침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움
 - 정보 및 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각자의 책임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형식 및 시간 틀을 통해 관련 정보가 인식되고, 획득되고 소통되어야 함
 - 정보 시스템은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재무와 준법 관련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생산해야 함
 - 모니터링(Monitoring): 내부통제 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과정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COSO의 보고서는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이사회와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책임을 기술하고 있음
 - 효과적인 이사회 구성원은 객관적이며 능력 있고, 질문을 제기해야 하며, 조직의 활동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사회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함
 - 경영진은 거버넌스, 지침과 감독을 제공하는 이사회에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또한 경영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하거나 부하들로부터의 소통을 무시하거나 눌러버릴 수 있는 포지션에 있을 수 있고,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부정직한 경영을 할 수 있는데, 강력하고 활동적인 이사회(특히

효과적인 상향 의사소통 채널과 재무, 법적, 그리고 내부 감사 기능이 더해지는 경우)는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교정하는데 최선을

- 감사위원회(감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내부통제의 설계, 구축 및 운영을 감독함
- 내부감사 행위는 다음과 관련된 조직감독, 운영, 정보시스템 내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내부통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함
 - 재무 및 운영 정보의 신뢰성과 정직성
 - 운영과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효율성
 - 자산 보호
 - 법, 규제, 정책, 절차 및 계약 준수
- 따라서 감사위원회(감사)는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의 적절성과 실효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 규정

-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중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해외 규범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구분	주요사항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관련 시스템의 개선점 모색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 리스크 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체계의 신뢰성 확보
IIA; The Audit Committee: Purpose, Process, Professionalism	- 내부통제체계의 효과성 검토 - 법규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성 검토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체계 검토
France Corporate Governance Code	-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체계의 효과성 모니터링
US NYSE Listing Standards	- 법규준수여부 감독

모범 기준

4.2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 및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내부통제시스템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감사위원회(감사)는 해당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진 및 회사 내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Ⅲ.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의무이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모범 기준

4.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외부감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대면 보고를 수령함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보고 전에 문서로 제출해야 함 	법 제8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감사위원회는 평가 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법 제8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시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함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만의 승인을 거치면 됨⁴⁵⁾ 	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9조 제3항

안내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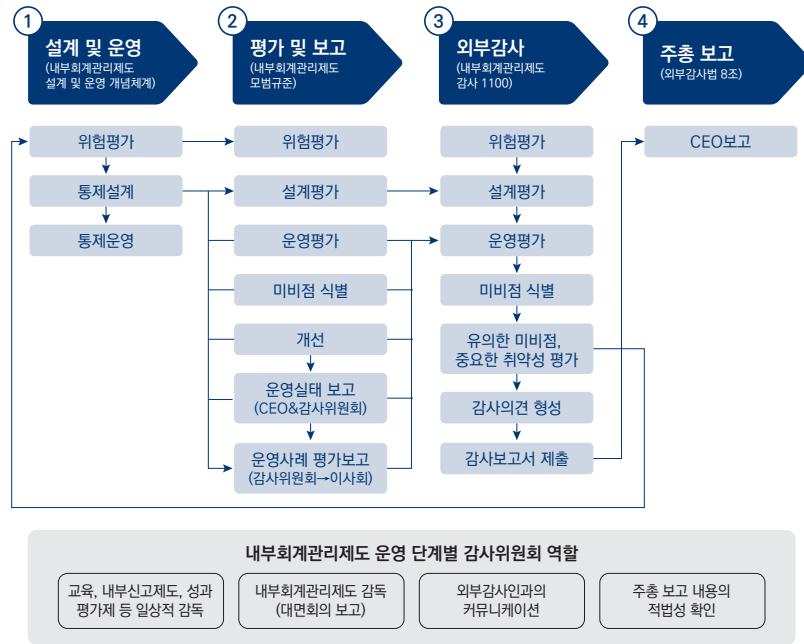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는 회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운영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개선하도록 함
 - 법은 매사업연도마다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평가주기는 회사의 제반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45) 상법 제393조의2 제4항, 제415조의2 제6항, 이에 관한 해석은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법령 개정 관련 FAQ 답변에서 제공함

- 반기평가의 경우 매년 실시되는 정기평가를 보조하는 중간점검에 준하는 개념으로 활용 가능하고,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이 아닌 일부에 관한 심층적인 점검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임

〈그림Ⅳ-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단계별 감사위원회의 역할 예시⁴⁶⁾



- 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및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등을 제공하고 있음
- 2018년 11월 1일 시행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었으며⁴⁷⁾, 감사위원회의 관련 역할도 강화되었음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고 수령, 평가, 평가결과 보고를 모두 대면회의를 통하여 수행해야 함

46) 삼정KPMG ACL, "Audit Committee Handbook 2018 2nd edition", 2018.11

47) 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 권한이 감사위원회(감사)에 부여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변형될 수 있음⁴⁸⁾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회계처리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이 미비하면 그 조치 수준이 가중될 수 있음⁴⁹⁾
 - 고의적이지 않은 회계처리 관련 위법행위 발생 시,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 정보의 영향력에 따라 그 동기를 단순 과실이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음
 - 회계처리 관련 위법행위 발생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본조치가 가중될 수 있음
-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권한 남용 및 통제 무시(Management Override)를 완화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⁵⁰⁾
 - 감사위원회의 감독 영역
 - 경영진의 권한 남용 및 통제 무시(Management Override) 발생 가능 영역을 식별하고 기업의 대처 방안을 평가
 - 직접 재무보고 책임이 없는 임직원에게 질문을 통해 경영진의 권한 남용 및 통제 무시(Management Override) 징후 파악
 - 경영진과 유의적인 회계 추정을 논의하여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의 합리성을 검토
 - 내부신고 프로그램 영역
 - 내부신고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검토
 - 내부신고 보고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검토, 시정 조치 필요성 고려

48) 회계감사기준 1100.

49)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50) PCAOB Guidance for Auditors of Smaller Public Companies, 황근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위원회포럼, 2019에서 정리

참고 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⁵¹⁾

III.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2.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나, 피조사자가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2)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2)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51) 본 기준은 감독당국의 감리·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조치양정을 위한 기준임

VI.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확정된 재무제표 공시일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1)과 같다.
- 3)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로 한정한다.)
- 4)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 6)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7)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경우. 다만, 위법동기가 고의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IV.2.에 따라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인 경우
- 9)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적용기법 2.1 이사회 의 역할, 책임 및 위임 규정 수립

11. 감사(위원회)는 외부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역할, 책임 및 위임 규정을 수립한다. 다음 항목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항목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도 반영한다. 이미 감사위원회 규정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는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 절차 및 역할과 책임
 - 내부회계관리조직 및 성과평가의 적정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변화사항 및 대응 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시적/독립적 평가 절차 및 결과
 - 평가에 포함되는 위험평가 결과 및 미비점 평가 결과 (외부감사인의 평가 결과를 포함)
 - 발생한 재무보고 관련 이슈가 관련된 내부통제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원인과 해당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
 - 기업의 재무관련 주요 공시 사항과 관련된 재무보고 과정의 적정성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검토
 - 중요한 회계정책 및 회계기준의 적용
 - 추정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주요 회계처리의 타당성 등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 필요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한 회사 전체 내부통제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승인
- 내부 감사부서에 대한 관리 감독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을 포함한 조직
 - 내부 감사부서의 역할, 예산 및 보고의 적절성
 - 내부 감사부서의 주요 업무 활동 및 결과

회계감사기준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72. 다음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를 변형하여야 한다.

- a.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함**
- b.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구성요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음
- c. 업무의 범위에 제한이 존재함 (문단 A97 참조)
- d.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문단83의 추가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A8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 **기업의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배기구의 감시가 효과적이지 않음**

※ ‘지배기구’는 회사를 감시하는 조직을 의미하며, 주로 감사위원회를 의미함

**체크리스트 ·
템플릿**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수행 체크리스트⁵²⁾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가?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당기 조치 계획 및 결과, 평가기간, 평가자, 평가 대상과 방식의 적정성 포함)하였는가?			
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인지하거나 보고 받은 회계처리 이슈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성 평가)하였는가?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을 확인하였는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는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는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가?			
운영실태보고서상 기타 항목의 적정성 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하였는가?			
필요 시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하였는가?			

52) 삼정KPMG ACI, "Audit Committee Handbook 2018 2nd edition", 2018.1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수행 체크리스트⁵²⁾ (계속)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추가 테스트 수행을 위한 내부감사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 이를 요청하였는가?			
평가 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는가?			
중요한 회계정책 및 회계기준 적용은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가?			
재무보고 관련 이슈가 적발되지 않은 경우, 그 원인과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은 적절히 평가 및 조치되었는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사항은 식별되었으며, 대응 방안이 수립되었는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도출 체크리스트⁵³⁾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앞서 제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는가?			
외감법 등에서 요구하는 대면보고와 관련된 사항의 문서화를 수행하였는가?			

53) 삼정KPMG ACI, "Audit Committee Handbook 2018 2nd edition", 2018.1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참고하여 재구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도출 체크리스트⁵³⁾ (계속)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하였는가?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반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중간평가 절차 및 결과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 ✓ 외부감사인이 보고하는 중간/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			
당기 중요한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가 적절하고 이에 따른 평가 계획이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였는가?			
평가자의 독립성과 적격성, 평가 방식(방법, 범위, 시기)이 적절한지 검토하였는가?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별도로 인지한 회계처리 오류 등과 관련된 내부 통제활동의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하였는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항목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절차와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하였는가?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이 적절한지 검토하였는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하였는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감사(위원회) 스스로 합리적인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효과성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가?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관련 자료,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자료 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론을 도출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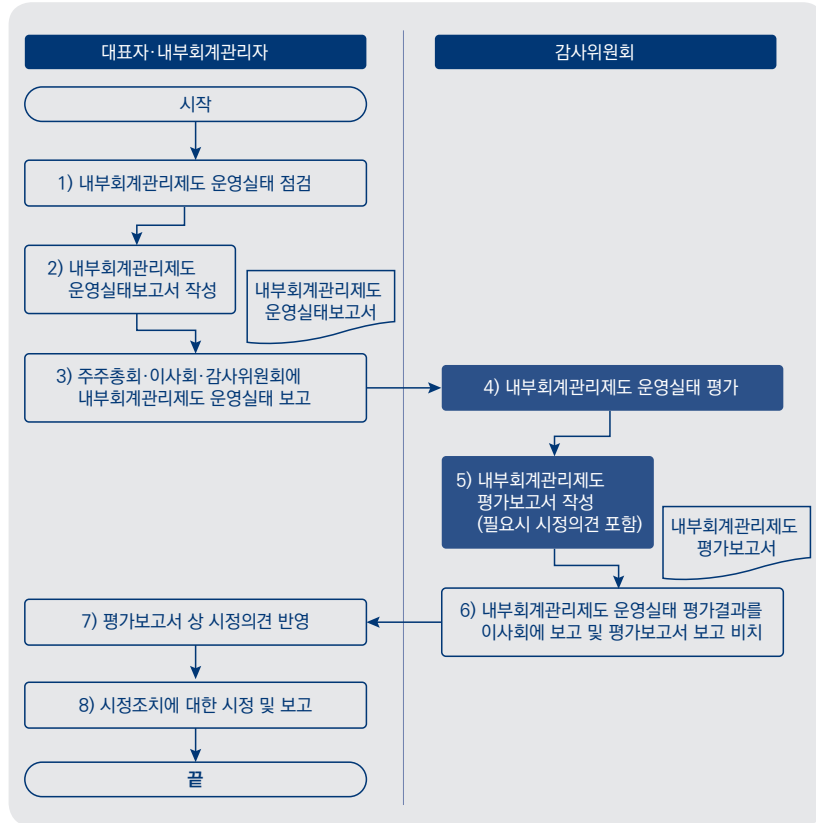
■ 감사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시 고려사항⁵⁴⁾

구분	설명
정보획득의 장벽	• 재무보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
역할과 책임	• 코로나19로 인한 전사 통제 담당자의 확진이나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 장애 여부는 없는 지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 중대한 변화	• 원격근무 등으로 발생한 현재의 통제방식과 프로세스에 대한 수정 여부 확인
재고파악 및 재고실사	• 재고 파악 현황 대비 물리적인 자산 실사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의 파악 방법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부정리스크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부정리스크의 증감여부 및 관련한 경영진의 인식 파악
공시	• 회사와 관련한 주요 보고사항이나 공시해야 할 새로운 항목의 발생 여부 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 '중대한 변화'는 수시로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
전사수준 통제	•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전사 통제수준의 감독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
정기보고서 제출일 준수	• 코로나19로 인해 정기보고서의 제출 및 정부당국의 제출연장 여부 확인
사이버보안	• 원격근무로 인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방안 보유 여부 확인
경영진의 통제사항 리뷰	• 코로나19 환경에 대한 경영진의 통제사항 리뷰 결과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테스트	• 내부회계관리제도 테스트와 관련한 충분한 증빙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54) KPMG Global, "How audit committee and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can respond to COVID-19", 2020

사례 예시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절차⁵⁵⁾



55) 삼정KPMG ACI, "Audit Committee Handbook 2018 2nd edition", 2018.11

모범 기준

4.4 리스크관리시스템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조직이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감독하고, 부정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윤리·준법경영 현황을 평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회사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감사위원회(감사)는 중요한 재무리스크에 집중해서 이를 관리하는 지침과 정책을 논의하여야 함
 - 이러한 요구사항은 주로 재무리스크와 관련되지만, 재무리스크는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 공시되는 다른 리스크(전략리스크, 운영리스크, 환경·보건·안전 및 기타 법규준수리스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함
 - 최근에는 사이버리스크 감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며 사이버리스크는 재무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함
 - 2020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는 기업의 각종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경영진의 위기대응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함
 - 뉴욕증권거래소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재무리스크 평가와 재무리스크 관리정책을 경영진과 논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⁵⁶⁾
- 리스크 감독 업무는 이사회와 각 위원회가 분배하게 되는데, 이사회는 특정 리스크의 특성을 평가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 위임함
 -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리스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운영·준법 등 재무보고 외 리스크 영역에 집중할 것이 권고됨

56) NYSE Listed Company Manual Section 303A.07

- 직접적인 재무보고 위험이 아닐지라도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들은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정보 전달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을 의미함⁵⁷⁾
 - 준법경영은 회사의 경영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윤리경영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보거나 윤리경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임
 - 회사는 준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감사위원회(감사)는 윤리·준법경영 감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미국의 해외부정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금지법(Bribery Act) 등 반부패 관련된 법규를 인지하고 이해하여야 함
 - 이를 바탕으로 법규위반 리스크가 큰 영역이 어디이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또한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은 경영진의 대응 내용과 함께 감사위원회(감사)에 보고되어야 함

참고 규정

뉴욕증권거래소는 주요 재무담당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는 행동규범을 웹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해상충의 처리절차
-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 금지
- 회사의 산업과 경쟁되는 사업의 영위금지

57)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기업윤리경영지원 활성화 방안”, p9, 2013

- 비밀정보의 처리절차
- 회사의 고객, 공급자, 경쟁사 및 직원과 관계에서의 공정한 대우
- 회사의 자산 보호 및 적절한 사용
- 내부자 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한 법규의 준수
-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
- 행동규범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10 Code of Business Conduct and Ethics

Listed companies must adopt and disclose a code of business conduct and ethics for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and promptly disclose any waivers of the code for directors or executive officers.

(중략)

Each listed company may determine its own policies, but all listed companies should address the most important topics, including the following:

- **Conflicts of interest.** (설명 생략)
- **Corporate opportunities.** (설명 생략)
- **Confidentiality.** (설명 생략)
- **Fair dealing.** (설명 생략)
- **Protection and proper use of listed company assets.**
(설명 생략)
- **Compliance with laws, rules and regulations (including insider trading laws).** (설명 생략)
- **Encouraging the reporting of any illegal or unethical behavior.** (설명 생략)

Website Posting Requirement: A listed company must make its code of business conduct and ethics available on or through its website.

**체크리스트 ·
템플릿**

■ 감사위원회의 윤리·준법 프로그램 감독 책임 관련 체크리스트⁵⁸⁾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일상업무에서 윤리 및 준법과 관련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임직원으로부터 감사위원회가 직접 의견을 듣는가?			
윤리·준법프로그램의 조직구조나 보고체계는 감사위원회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가? (예: 최고윤리 및 준법담당임원이 감사위원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고하는가?)			
최고윤리 및 준법담당임원(CECO, Chief Ethics and Compliance Officer)은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기타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경영진이 윤리·준법과 관련된 신고사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윤리 및 행동규범을 위반한 임직원들에게 즉시, 적절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한 근거가 유지되는가?			
감사위원회가 윤리 및 행동규범과 관련된 이슈들과 이에 대한 회사의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있는가? 윤리 및 준법과 관련된 사항이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고정된 논의 주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는가?			
윤리·준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사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회사의 조직문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있는가?			

58)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p119, 2019

■ 감사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사이버리스크 평가 시 고려사항⁵⁹⁾

구분	설명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와 코로나 19 관련 회사의 대응에 대해 직원에게 명확히 전달했는지 여부 확인 • 코로나19로 인해 피싱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교육을 직원 대상으로 실시했는지 여부 확인 • 클라우드 시스템을 포함해 대체 시스템 또는 솔루션의 활용도가 높은 경우 보안 문제를 담당할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 •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해, 보안사고 모니터링 등 보안 운영방법의 변경여부 확인
IT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격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 • 누구나 사고 관리 가이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물리적 접근이 제한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전략회의실 보유 여부 확인 •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소수의 핵심 직원에 의존 여부 및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확인 • 주요 사고 대응 관리자 및 복구 책임자가 부재한 경우, 비상-사고 대응 위기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되고 변경되는지 확인 • 대다수의 직원이 재택근무 시, 광범위한 랜섬웨어 공격 문제를 처리할 방안이 있는지 확인

59) KPMG Global, "How audit committee and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can respond to COVID-19", 2020

■ 감사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감사위원회가 확인할 경영진의 코로나19 위기대응책 체크포인트⁶⁰⁾

구분	설명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핵심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 여부 •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핵심 리스크 이해 • 위기 대처와 관리를 위한 신속한 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 • 빠른 경기 회복·글로벌 경기 둔화·글로벌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구분해 사업·재무 시나리오 계획 검토
중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해 당면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 검토 • 경영진, 내부감사부서, 외부감사인과 등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행 • 인력 운영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및 평가안 검토 • 부문별 영향력에 대한 단계적 분석안 검토 • 개선된 경영진의 위기 관리 실행 방안이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 검토

60) KPMG Global,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OVID-19", 2020.3.12

5 내부감사부서

모범 기준

5.1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자본시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법인의 내부감사장치⁶¹⁾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해야 함 	법 제159조 제2항 시행령 제168조 제6항 제3호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임원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장에 대한 임면권 또는 임면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큼
- 내부감사부서의 장에 대한 평가권한을 감사위원회가 갖는 것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적절히 확보하고 감사위원회(감사)의 직접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61) 이사회,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내부감사부서 등이 내부감사장치에 해당됨

- 감사위원회(감사)는 기업의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의견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부감사부서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내부감시장치에 해당하므로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조직 체계상 감사위원회(감사)에 직접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또한 감사위원회(감사)의 직접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이나 관련 내규에 마련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감사)는 필요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장 또는 업무담당 내부감사부서 부서원의 보고를 직접 받을 수 있어야 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범 기준

5.2 내부감사부서의 감독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부여
 - 특히 그 역할이나 조직의 규모, 예산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완수하도록 하여야 함
- 국제내부감사인협회가 제시하는 3차 방어선 모델에 따르면, 내부감사기구는 “3rd line of defense”로서 리스크 관리체계 및 1차·2차 방어선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신을 제공함

〈그림 IV-4〉 3차 방어선 모델(Three Lines of Defense Model)



- 내부감사 행위는 다음과 관련된 조직감독, 운영, 정보시스템 내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내부통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함
 - 재무 및 운영 정보의 신뢰성과 정직성
 - 운영과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효율성
 - 자산 보호
 - 법, 규제, 정책, 절차 및 계약 준수
-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감사)의 직무 특히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계를 평가하고 감독업무를 지원하며 그 역할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 회사의 재무보고, 운영 및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 리스크 관리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방안을 제시
 -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방향성 제시
 - 내부감사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촉매역할
 -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의 효과성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감사위원회가 이들 영역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지원
 - 외부감사인과 업무를 공유 및 조정하고 재무제표나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상호 간의 관점을 공유
- 국제내부감사인협회는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의 필수적 도구라고 언급하면서,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감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함⁶²⁾
 - 감사위원회의 책임 아래에 내부감사부서의 장이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
 - 내부감사부서가 적절한 업무와 인력이 주어져 있는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지위가 부여되는지 확인
 - 연간 내부감사 계획 검토 및 평가

62) IIA, "How internal audit works with the audit committee", 2019.10

- 내부감사 결과에 대한 정기 보고 수령
- 내부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 검토
- 연 1회 이상 경영진을 배제한 내부감사부서의 장과의 면담
- 내부감사의 품질과 효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내에서 내부 감사의 역할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크리스트 · 템플릿

- 감사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내부감사 감독시 고려사항⁶³⁾

구분	설명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부서 인력의 건강과 안전 보장 • 경영진의 비즈니스 운영 및 리스크 평가활동 지원 • 현재 당면한 감사계획 실행 재고 • 원격근무 방안 고려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비드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되는 감사활동의 잠재적 축소 및 중단을 포함한 행동강령 안내 • 원격 근무시에도 내부감사부서 인위간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고안 • 지속되는 혼란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감사계획 수정·보완

63) KPMG Global, "How audit committee and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can respond to COVID-19", 2020

모범 기준

5.3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관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장과 구성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업무 수행의 질은 내부감사부서의 장과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신분상의 안정 등에 영향 받음
 - 따라서 내부감사부서의 장과 구성원이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신분상의 불이익 우려 없이 감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함
-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고라인 및 인사권 확보, 구성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인사평가에서의 우대제도가 시행되어야 함

〈표Ⅳ-4〉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방안⁶⁴⁾

구분	내용
내부감사 수행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감사)에게 직접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이 감사위원(감사) 또는 내부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 감사위원(감사) 등에게 보고하고 감사위원회(감사)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때 그 동안의 감사결과를 일괄 보고하도록 운영할 수도 있음
인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인사 발령, 인사 고과 시 감사위원회(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그들이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컨대,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보직과 전보는 감사위원장(감사)의 서면 요청 시 대표이사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그 사유를 감사위원장(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해야 함 - 또한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이 감사직무를 수행하고 난 후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64) 한국상장회사협의회·삼성KPMG ACI,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 p27, 2019.5

〈표Ⅳ-4〉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방안⁶⁴⁾ (계속)

구분	내용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감사)는 경영진을 배제하고 내부감사부서의 장과 비공식적 만남을 가질 수 있음 • 내부감사부서의 장이 공식적인 감사위원회(감사) 회의에서 보고하기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비공식회의는 내부감사부서의 장이 솔직한(혹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함 •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에게는 인사나 보상과 관련해 우대제도가 적용되어야 함

〈표Ⅳ-5〉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를 위한 주요 인사 우대 정책⁶⁵⁾

구분	내용
신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일정기간 보직 변경 제한 • 통상적인 업무 과실을 제외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최대한 배제
인사평가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평균 이상의 인사고과 유지 및 근무평정 우대 기준 마련 • 전보 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에게 인사평정권 부여
감사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에게 일정액의 감사수당 별도 지급 •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동일직급 동일호봉보다 일정액 높은 비율의 연봉 보전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Ⅲ.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 한국상장회사협의회·삼성KPMG ACI,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 p28, 2019.5

모범 기준

5.4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자격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 구성이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되고 있으며, 감사는 1명만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감사업무의 실질적 효과성 여부는 내부감사부서의 장과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좌우될 여지가 매우 큼
 - 따라서 내부감사부서에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인력 규모를 확보하여야 함
 - 다만, 내부감사부서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하여는 기업의 규모, 영위 업종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소규모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또한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에 대한 자격 및 경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
- 국제내부감사기준(IIA)은 내부감사부서가 부서의 책임 완수를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그 외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소유 또는 취득하여야 한다고 제시함⁶⁶⁾
 - 또한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인원들로 하여금 적절한 전문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증명할 것을 권고함

66) 국제내부감사기준 1210(IIA).

참고 규정

국제내부감사기준

1210 - 숙달

내부감사인은 그들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그 밖의 능력을 지녀야 한다. 내부감사부서는 부서의 책임 완수를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그 외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소유 또는 취득해야 한다.

해설

숙달은 내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및 기타 역량을 의미하는 총체적인 용어이다. 그것은 관련된 조언 및 권고사항을 필요하게 하는 현재의 활동, 경향, 그리고 새로이 떠오르는 사안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부감사인들은 적절한 전문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증명하도록 권장된다. 이런 자격증으로는 국제내부감사인협회 및 기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국제공인 내부감사사 및 기타 자격증 등이 있다.

1210.A1 - 최고감사책임자는 감사인들이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그 밖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마땅한 조언이나 지원을 구해야 한다.

1210.A2 - 내부감사인은 부정위험과 그 부정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의 조사 및 적발이 주된 책임인 사람 정도의 전문능력을 지닐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1210.A3 - 내부감사인은 핵심 정보기술 위험 및 통제에 관한 지식과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기반 감사 테크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내부감사인들이 정보기술 감사업무에 우선적 책임이 있는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1210.C1 - 감사인들이 그들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함에 있어 지식, 기술, 기타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부문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요청 받을 경우 최고감사책임자는 해당 업무를 거절하거나 마땅한 조언이나 지원을 구해야 한다.

V.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모범 기준

1.1 외부감사인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선임 후에는 해당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주주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외부감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의무설치하는 경우, 매해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함 • 감사위원회(감사)는 미리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감사인 선정을 위해 대면회의를 개최해야 함 • 감사위원회(감사)는 감사인의 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함 •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에 따라 회사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에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지정된 외부감사인의 재지정 또는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p>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p> <p>시행령 제17조 제7항, 제13조 제3항, 제4항, 제5항</p>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함
 -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외부감사인 후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회사의 역할은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것임
 - 자산 2조 원 이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 사업개시일 이전
 - 그 외의 회사: 사업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 사업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감사가 선정권한을 가짐
 - 다만, 감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회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함

〈표 V-1〉 외부감사인의 선정(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구분		외부감사인의 선정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그 밖의 회사 ¹⁾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선정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	자본금 10억 원 ²⁾ 이상	사원총회 승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선정	

-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선임 관련 준수사항과 후보평가 기준을 문서로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해야 함
 - 선임관련 준수사항은 외부감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에 투입해야 할 시간 그리고 외부감사에 필요한 자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동 절차는 최종 계약 단계에서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것임
 - 후보평가 기준 수립은 감사위원회가 후보 외부감사인을 공정히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외부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요 평가 기준이 문서에 포함되어야 됨

1)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회사: 그 감사인을 선임
 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마련된 기준으로 후보자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회사의 동종업종에 대한 감사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투입인력의 변동성, 투입시간, 전문성, 중점감사분야 역량 등을 평가함³⁾

〈표 V-2〉 외부감사인 후보평가 기준 필수 기재 사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 감사인의 독립성(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및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 •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함 • 전기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 -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는 필히 대면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개최된 회의 횟수, 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참석자의 주요 발언 내용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로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는 외부감사인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면 회의 개최방식은 현장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외부감사법에서 인정하는 원격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

3)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제3장 제1절 제4항.

〈표 V-3〉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 회의 인정 범위

방식	회의 인정		설명
	가능	불가	
서면 결의		✓	대면 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의결권 대리행사		✓	선정 권한은 감사위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타인이 대리할 수 없음
원격 통신 수단	✓		원격 통신을 통한 회의는 음성과 영상이 실시 간으로 송수신 되는 것에 한정함

- 자유 선임제에 해당하는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함
 -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후보평가 기준과 회사가 계약에 활용할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외부감사인 선임 계획 및 기한을 고려해 준비해야 함
- 주기적 지정제에 해당 시,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로이 선임한 회사는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함
 - 이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 외부감사법 시행일(2018년 11월 1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지정제에서 제외됨
 - 또한 주기적 지정제가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하기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는 지정 시점을 연기 요청할 수 있음

〈표 V-4〉 주기적 지정제 연기 요건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 되지 않은 경우 • 해당 연도에 주기적 지정대상회사가 다른 연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자산 총액이 큰 회사부터 우선지정(차기 사업연도에는 지정연기회사부터 우선 지정)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간의 주기적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 직권 지정제에 해당 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기에, 감사위원회는 회사와 해당 외부감사인의 계약에 요구되는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선임 기한을 고려해 준비해야 함
 - 동 제도는 공정한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높고,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회사 등에 적용되는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감사위원회는 이에 주의하여 직무 활동을 전개함이 바람직함

4) 금융감독원, "新 외부감사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018.9.17

〈표 V-5〉 직권지정 대상 사유⁵⁾

분류	내용
기존 사유	① 회사요청 ② 감사인 미선임 ③ 감사인 부당교체 ④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⑤ 감리결과 조치 ⑥ 부채비율 과다(재무기준) ⑦ 관리종목 ⑧ 상장예정법인 ⑨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지정 요청 ⑩ 횡령/배임 발생 ⑪ 주채권 은행 등의 지정 요청 ⑫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등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경미한 위반 제외)
신설 사유	① 재무제표 대리작성/회계 자문 요구 ②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③ 투자주의 환기종목(단,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사유는 제외) ④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⑤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⑥ 3년간 최대주주 2회 변경 이상 또는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⑦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 위반

- 직권지정 예고된 외부감사인이 하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사유가 합당한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함

5) 금융감독원, "2020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2020.2.6

〈표 V-6〉 지정 사유별 직권지정 통보 절차⁶⁾

주요 지정사유	지정대상 선정일	예시
회사요청, 상장예정	지정요청일	7월중 요청: 8월 둘째주 사전통지 → 9월 둘째주 본통지
감사인 미선임	6월 초일	7월 둘째주 사전통지 → 8월 둘째주 본통지
감사인 부당교체, 관리종목(비적정)	금융감독원장 인지일	5월 중 인지: 6월 둘째주 사전통지 → 7월 둘째주 본통지
감리조치, 관리종목 (비적정 외) 등	9월 초일	10월 둘째주 사전통지 → 11월 둘째주 본통지

〈표 V-7〉 지정받은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요건

구분	주요 재지정 사유
기존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결 지배 및 종속회사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 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재지정
신설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받은 회사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서의 재지정 요청 허용(단, 회사군 이상의 등록회계법인으로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하여 감사품질을 제고) •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등

- 감사위원회는 주기적 지정제 혹은 직권 지정제를 통해 선임될 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며, 해당 시, 즉각 다른 외부감사인 선임을 준비해야 함

6) 금융감독원, "2020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2020.2.6

- 감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후보 외부감사인의 관련 내용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공고 외에도 감사위원회는 후보 외부감사인에게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법에서 정한 해임 요건에 해당하였다면, 회사에 해당 외부감사인 해임을 요청할 수 있음
 - 해임 요건에 해당함을 회사가 확인한 경우, 해임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시행되어야 함

〈표V-8〉 감사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 해임 요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이 회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외부감사인이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가한 경우 • 해외투자자가 출자한 회사에 한정하여, 출자조건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와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와 동일한 지정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 또한 회사는 해임 예정인 외부감사인을 대체할 신규 외부감사인과의 계약 2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해임과 관련한 의견진술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표V-9〉에 따라 역할을 수행해야 함

〈표 V-9〉 해임 예정 외부감사인 의견진술 상황과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	내용
의견진술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	• 외부감사인이 해임된 사유와 외부감사인의 진술 의견 및 감사위원회 전원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확인후 서명하고, 그 문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감사위원회	• 해임될 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고, 회사가 정리한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의견진술이 부재한 경우	회사	• 외부감사인이 별도의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의견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감사위원회 전원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확인후 서명하며, 그 문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감사위원회	•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의견진술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요청에 의한 외부감사인 해임시, 의견진술권이 있음을 외부감사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 권한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해임 불가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에 있어,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절차는 사실상 동일하나, 선임 과정에 감사가 문서로 준비해야 하는 선임관련 준수사항과 후보평가 기준 마련 및 회의를 통해 정한 외부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함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7인 이상의 위원이어야 하며, 개의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의결은 출석한 위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요구됨
 - 다만,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을 7인 이상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된 인물 중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

〈표 V-10〉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요건(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1명 •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각 1명

- 부득이하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 약식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약식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감사 및 동 위원회에 포함된 사외이사 1명은 필수적으로 출석해야 함

**금융당국
보도자료**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18.9.4.)」

1.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 미준수시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 점을 유의. 특히 10월말 결산 일반법인은 '18.12.15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18.12.31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함

2.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직접 후보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하며, 감사보수, 시간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까지 수행해야 함
 - 시행시기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시)

- (개정내용)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 시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평가 기준'의 문서화와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이 새롭게 도입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발표 (금융위원회, 2018.4.9.)」

-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
 - 지정예정 내용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당초 지정예정내용을 변경

법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재무상태가 취약한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연도 연속 영업이익 또는 영업현금흐름 < 0 - 3개연도 연속 이자보상 배율 < 1 • 일정 요건 하에서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권 허용 등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
시행령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경우 •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미 제출한 경우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외국시장의 상장회사를 지정제의 예외로 하는 규정 삭제 (사유: 선진 외국시장의 상장이 회계 공신력을 보장하지 않음)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흡한 경우 지정하는 규정 삭제 (사유: 내부회계관리 미흡으로 감사의견을 제시하면 지정감사인으로 교체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공정한 내부회계관리 감사를 저해할 우려)

**체크리스트 ·
템플릿**

■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감사위원회는 당해 외부감사인 선임에 적용되는 선임제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외부감사인 계약 일정을 파악하였는가?			
자유 선임제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과 후보평가기준을 외부감사인 계약 일정 수립 이전까지 문서로 마련하였는가?			
직권 지정제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을 계약 일정 수립 이전까지 문서로 마련하였는가?			
직권 지정제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 통보된 외부감사인의 재지정을 고려하는 경우 그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항임을 파악하고 승인 여부를 고려하는가?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련된 회의는 법에서 인정하는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고, 회의의 주 참여자와 발언 내용 등은 문서로 기록되었는가?			
계약기간이 잔존한 전기 외부감사인 해임을 고려할 때, 전기 외부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는가?			

사례 예시

-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후보평가기준 표준예시 내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⁷⁾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100점)				
가. 입찰가격						10점
나. 감사품질	90점	(1)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40점	감사담당자의 경험	15점	
				감사담당자의 산업전 문성	13점	
				파트너의 업무부담	3점	
				매니저 및 스텝의 업무 부담	6점	
				징계	3점	
		소계	40점			
	(2) 회계법인의 역량	20점	내부품질관리	10점		
			독립성 및 법규준수	5점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	5점		
	소계	20점				
	(3)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30점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15점		
			파트너 및 매니저의 업무 관여도	6점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 계획			6점			
전문가 활용			2점			
감사위원회와의 의사 소통			2점			
소계	30점					
총계(가+나)					100점	

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표준예시". 2018.11

- 입찰가격평가와 관련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평가대상이 전기감사인일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리적인 감사보수와 실제 청구한 보수가 큰 차이가 없다면 가산점 부여
 - 다만, 현저히 낮은 감사보수를 제시한 경우 감사계획서 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 고려

- 감사품질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감사품질은 감사업무 수행 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및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에 의해 평가
 - 다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회계법인의 재무상태,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의 충실도 등도 평가항목에 추가 가능
 -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40점)
 - (1)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감사업무 수행 팀의 역량은 감사품질에 중요한 영향
 - (2) 감사업무 수행 팀의 역량은 경험, 전문성, 업무부담 정도 등에 의해 평가 가능
 - 회계법인의 역량(20점)
 - (1) 회계법인의 조직구조, 품질관리정책, 인사관리, 투자 등도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2) 다만,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Big 4 또는 Non-Big 4 중에서만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즉, 회사에 적합한 유형의 감사인이 있을 수 있는 바, 회계법인의 역량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배분
 - (3) 회계법인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일부 수집이 가능하나, 제안서 모집 공고 시 다음의 정보를 제안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 가능

〈표 V-11〉 회계법인 역량 평가항목 예시

평가기준		배점	평가방법
내부품질 관리	내부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4점	제안서에 기술된 내부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의 적정성을 상대평가로 측정
내부품질 관리	소속 공인회계사 수 대비 품질관리인력의 비율	3점	제안서에 기술된 소속 공인회계사 수(수습 포함) 대비 품질관리인력의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로 측정
	과거 3년간 품질관리 지적건수	3점	제안서에 기술된 연결재무제표 감사건수 대비 품질관리 감리 지적건수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 평가로 측정
독립성 및 법규준수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3점	제안서에 기술된 독립성 절차의 적정성을 상대평가로 측정
	기타 법규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2점	제안서에 기술된 독립성 이외의 컴플라이언스 절차(예를 들면 반부패, 김영란법 준수, 비밀유지, 사이버 보안대책 등)의 적정성을 상대평가로 측정
과거 수행 업무의 적정성	최근 3년간 감리지적 비율	3점	제안서에 기술된 재무제표 감사건수 대비 감리지적 회사수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로 측정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작성비율	2점	제안서에 기술된 재무제표 감사건수 대비 재무제표 재작성 회사수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로 측정

-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30점)

- (1) 제안서에 감사투입시간 및 투입인력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 (2) (외부감사인후보 중 전기감사인이 존재 시) 전기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 해당 항목에 가산점 또는 감점 부여
- (3) (외부감사인을 변경하는 절차 중 전기감사인 의견진술내용이 존재 시) 외부감사인후보 중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특정 위험분야를 반영하여 감사계획을 제출하였을 경우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항목에 가산점 부여
- (4) 또한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감사과정에서 전문가 활용 계획의 적정성도 평가

모범 규준

1.2 외부감사계약의 검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감사시간, 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동종 업계에 대한 감사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중점감사분야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조건이 당초 선임단계에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외부감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감사)는 외부감사에 필요한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에 필요한 인력을 문서로 정해야 함(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새로이 선임하거나 변경 선임한 경우, 정기총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감사계약서 사본 등 제출의무) 	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 검토하고, 계약조건이 감사위원회가 정한 선임관련 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함
 - 계약조건에 포함될 사항으로는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외에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동종 업계에 대한 감사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등), 중점감사분야 등이 있음
 - 특히 감사보수 산정 근거가 되는 감사시간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 표준 감사시간⁸⁾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사가 회사에 요구되는 현실적인 외부감사 자원을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함

8) 외부감사법 제16조의2.

-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이 완료된 후,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유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및 주주에 계약 관련 보고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적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보고를 이행하는지 감독해야 함
 - 자유선임제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다면, 회사의 증권선물위원회 대상 선임 보고 기한은 계약 체결 2주 이내이며, 직권지정제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대상 보고 의무는 없음

〈표 V-12〉 외부감사인 선임 유형별 회사의 보고 의무

외부감사인 선임유형		보고 대상
자유선임제		주주 및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제	직권	주주
	주기적	주주

- 주주 대상보고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하며, 해당 공고는 외부감사인과 계약 종결 시까지 유지해야 됨
- 증권선물위원회 대상 보고는 해당 법령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의 DART 접수보고시스템(<https://filer.fss.or.kr>)을 통해 전자접수함

참고 규정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보고자료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금융위원회, 2019. 2. 11.)」

-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후 주주 및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주주 보고)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주주에게 보고
 -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당해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전자문서의 형태로 금융감독원에 제출
 - 선임보고 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록), 감사인 변경 시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반드시 DART접수시스템 내 외부감사보고시스템(<http://filler.fss.or.kr>)에서 전자보고(우편접수 불가)

체크리스트 · 템플릿

■ 감사 업무 수행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가?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조건이 당초 선임단계에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모범 기준

1.3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 사전협의

감사위원회는 감사계약 체결 후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계약 체결 후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⁹⁾
 - 분·반기 검토 및 기말감사 일정, 감사 투입인원, 실사·외부조회와 관련한 사항, 기타 구체적인 감사절차 등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결과를 외부감사 시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지 여부 및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표 V-13〉 외부감사 업무단계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세부감사계획 점검 방향¹⁰⁾

구분	내용
감사계획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예비적 견해• 감사인이 계획한 유의적인 중요 왜곡표시위험 대처방법 등• 부정 위험 관련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기능의 이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연결재무제표 감사계획: 수행되는 업무 개요• 내부감사기능 활용계획
감사수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의 부정행위,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항, 회계기준 위반 사실•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경영진의 비합리적 조회서 발송 거부• 특수관계자 관련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룹재무제표 감사• 핵심감사사항

9)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제3장 제1절 제6항.

10) 삼정KPMG-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 p229, 2019.5

〈표 V-13〉 외부감사 업무단계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세부감사계획 점검 방향¹⁰⁾ (계속)

구분	내용
감사결론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사건 발생 여부 • 미수정왜곡표시 및 감사의견에 미칠 영향 • 감사의견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되는 변형을 발생시킨 상황과 변형 문항 •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문서 내의 기타 정보의 수정이 필요하나 경영진이 수정을 거부한 경우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 진술

사례 예시

- 감사계획 단계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감사계획 단계에서 지배기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함

Part 1. 감사계약 및 독립성

-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의사소통 의무
- 경영진의 책임
- 감사인의 책임 및 감사계약의 내용
- 독립성

Part 2. 감사전략

- 감사의 목적
- 감사의 범위 및 시기
- 그룹 감사의 개요
- 감사팀 구성

Part 3. 부정 및 부정위험

- 부정의 정의
- 부정 관련 경영진의 책임 및 지배기구의 활동
-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및 감사인의 역할

2 외부감사 실시단계

모범 기준

2.1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하여 외부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 감사기능을 수행해야 함
 - 또한 외부감사인에게 구체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증거 수집에 도움을 주는 등 외부감사인과 공조를 통해 감사역할을 수행하여야 함¹¹⁾
- 주요 지침이 정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의사소통 권장 횟수는 <표V-14>와 같으며, 각 지침은 공통적으로 경영진을 배제한 회의가 필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표V-14>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의사소통 권장 기준

구분	횟수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 (경영진을 배제한 회의) 분기당 최소 1회
외부감사 관련 감사위원회(감사) 모범사례	• (경영진을 배제한 회의) 분기당 최소 1회
회계감사기준	• (경영진을 배제한 회의) 연간 최소 1회 • (통상적 회의) 외부감사인의 정기적 참여 • (감사위원회 위원장 한정) 외부감사인과 주기적 대화

11)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제3장 제2절 제7항.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진의 적격성이나 성실성에 관한 특이사항을 외부감사인과 논의할 수 있음. 이러한 논의는 경영진의 집행책임을 인지하게 함과 동시에 사실에 기반한 주요 이슈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며, 경영진에 추가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¹²⁾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아젠다를 주요 업무 및 주체별로 정리하면 i)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ii) 경영진 관련 iii) 외부감사인 관련으로 구분됨¹³⁾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 (1) 재무보고 담당부서(회계팀, 재무팀 등) 구성원의 역량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
 - (2) 재무제표 작성 책임의 인지 여부와 외부감사법 준수 여부
 - 경영진 관련
 - (1) 경영진이 회계 및 감사 이슈를 이해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지 여부
 - (2) 새로운 회계기준서의 적용 등에 대해 경영진이 잘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
 - (3) 회사의 감사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여부
 - (4)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 고발 정책이 적절히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외부감사인 관련
 - (1) 감사수행 중 직면한 어려움(애로사항)
 - (2) 회사 외부감사인의 관점에서 가장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분야와 그에 대한 회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인으로서의 확인 내용 및 결과
 - (3)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향후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과 그 이유
 - (4) 경험있는 감사인원이 참여하고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보수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5) 감사수행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사항 존재 여부, 재무제표에의 반영 여부, 미반영시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

12)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제3장 제2절 제10항.

13) 최종경 제44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외부감사인과 감사&감사위원회의 협업은 왜 중요한가?",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기조연설, 2019.6.27

- (6)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와 협의한 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 (7) 중요성 설정기준 및 금액,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 (8) 내부통제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 또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은 외부감사인의 업무 단계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표V-15>로 정리됨

<표V-15> 외부감사인의 업무 단계를 고려한 의사소통 아젠다¹⁴⁾

분류	내용
① 감사 계획단계	감사인의 독립성
	계획된 감사 범위와 시기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개요
	핵심감사사항
② 감사 수행단계	부정
	내부통제 미비점
	위험분석에 대한 업데이트
	회계/감사 이슈에 대한 업데이트
③ 감사 종료단계	감사범위의 제한, 미공시, 의견변형 등
	강조사항과 기타사항 문단
	전기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기타정보
	중요하고 잠재적인 위험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부정
	법규위반
	내부통제 미비점
	미수정 왜곡표시 영향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개요
	조회서 발송의 거부
	초도 감사시 기초잔액의 왜곡표시
	특수관계자와의 관련한 유의적 사항
	후속사건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의문	
서면진술	

14)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19년 제1회 정기 포럼", 2019.4.17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의사소통에 대한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가 개최된 구체적인 날짜와 참석자 그리고 회의의 방식과 주요 발언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 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¹⁵⁾

〈표 V-16〉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의사소통 공시 양식

구분 ¹⁶⁾	일자	참석자 ¹⁷⁾	방식 ¹⁸⁾	주요 논의 내용
1				
2				
3				
4				

1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4]

16)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

17) 참석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 각각에 대해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기재

18) 회의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

참고 규정

회계감사기준 260

A7 감사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명칭의 하위그룹)는 많은 국가에서 존재한다. 비록 그 구체적인 권한 및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의 의사소통은 지배기구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양호한 지배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함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감사위원회의 성원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연락함
-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경영진을 참석시키지 않고 감사인과 만남

금융당국 보도자료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금융감독원, 2016. 7.18.)」

- 감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활용해야 함(회계감사기준 260)
 -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외부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초청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원은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견교류
 - 감사위원회는 최소 분기에 한번씩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회합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및 회계기준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즉시 공유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 이를 통보하여 외부감사에 참고하도록 함

- 외부감사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외부감사인이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이 사실을 보고받고 재무제표 재작성·수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진의 적격성이나 성실성에 관한 특이사항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논의할 수 있음. 이러한 논의는 경영진의 집행책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사실관계와 주요 이슈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경영진에 추가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체크리스트 ·
템플릿**

■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는가?			
핵심감사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회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			

■ 감사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외부감사 감독시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할 사항¹⁹⁾

설명

- 기 계획된 외부감사인의 감사 범위와 실제 감사 시기에 나타난 중대한 변화 (신규 중요 리스크와 감사전략의 변경사항 반영)
- 감사실시 전후의 중요한 차이점 논의
 - 충분한 감사 증빙자료 획득 여부, 감사 증빙자료 획득 지연 사항
- 경영진과의 의견 일치 및 불일치 사항
- 감사보고서 상 예상되는 수정사항 (감사범위, 계속기업 가정 등)

19) KPMG Global, "How audit committee and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can respond to COVID-19", 2020

모범 기준

2.2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점검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직접 작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외부감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대표자와 회계담당 임원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함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게 대리 작성하게 하면 안 되며, 외부감사인도 이에 응하면 안됨 	법 제6조 제1항, 제6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가 감독해야 할 회사의 외부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음²⁰⁾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 만약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자문회계사(private accountant)의 고용을 이사회

20)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에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회사가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²¹⁾

■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에는 법에서 정한 주석을 포함해야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추가 제출해야 됨²²⁾
 - 주석에 포함되는 것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의미하며, 일부 누락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²³⁾
-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정기한은 <표V-17>과 같음²⁴⁾

<표V-17> 회사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정기한

구분		재무제표 제출기한
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일 전 ²⁵⁾
연결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 ²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²⁷⁾

-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재무제표를 법정 기간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²⁸⁾

21)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제3장 제2절 제11호.
 22) 외부감사법 제6조 제2항, 제2조 제2호, 제3호.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조.
 23)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 2020.1
 24) 외부감사법 제6조 제2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25)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6)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27)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28) 외부감사법 제6조 제3항.

-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사와 업무집행지사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²⁹⁾,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회사의 임원의 해임 권고, 6월 이내의 직무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³⁰⁾

■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게도 제출하여야 하므로, 감사위원회는 감사 전 재무제표도 법정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 감사전 재무제표를 주권상장법인은 상장회사협의회에 제출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³¹⁾

-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체크리스트 ·
템플릿**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감독 업무 수행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재무제표(주식 포함)를 직접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가?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지를 확인하였는가?			

29) 외부감사법 제42조 제1호.
30) 외부감사법 제29조 제1항.
31) 외부감사법 제6조 제5항.

모범 기준

2.3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외부 정보 수집

감사위원회는 회사 관련 외부시장 정보(환율이나 유가 변동, 원재료가격 변동 등)와 내부정보(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계약사항 변경 등)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외부감사인과 공유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감독하고, 이러한 정보가 회사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함. 또한 필요시 해당 내용을 외부감사인과 공유하여 외부감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³²⁾

- 환율, 유가, 원재료가격 등 회사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시장상황
- 회사의 사업계획, 주요 계약사항의 변경여부 등 회사 내부정보

■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정보 수집에 외부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II.2.7(회사 정보제공 및 지원)을 참고

32)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제4장 제19항.

모범 기준

2.4 외부감사과정에 대한 점검

감사위원회는 감사계약대로 외부감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공인회계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법인은 회사로부터 외부감사 외의 업무를 수임받기 이전, 이해상충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만약 동의를 얻어 그 업무를 수행한다면 감사위원회와 협의 및 동의 등의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8년간 보존해야 함 	법 제21조 제3항,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5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업무가 외부감사 수행인력 현황, 감사지원 인력 현황 및 자료제공 등이 당초 감사계약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함³³⁾
 - 평가된 내용은 외부감사 종료후 실시될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외부감사 계획 및 외부감사인의 제안 요청서를 비교하여, 실제 수행된 외부감사 활동이 합의된 계약 내용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됨
 - 매분기 전기 보고 시 투입 인력과 시간을 보고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외에 회사의 비감사용역을 수임하고자 할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비감사용역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지 감독해야 함

33)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제3장 제2절 제13항.

-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업무 수행 시 피감사인과의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하기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용역 제한 규정이 존재함³⁴⁾³⁵⁾
 - 유럽연합 일부 국가의 경우 금지되지 않은 비감사용역도 감사보수의 70% 이내로 제한하며, 미국은 소송 등 절차 관련 회사 또는 법적 대리인 주장을 옹호하는 전문가적 견해 제시도 금지함³⁶⁾
- 만약, 비감사용역이 독립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면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필요하며, 감사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을 시 외부감사인은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 비감사용역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가 의사소통한 내용은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해야 함

〈표 V-18〉 외부감사인에게 금지되는 10대 非 감사용역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자산 등에 대한 실사와 재무보고, 가치평가, 자산 등의 매수도 거래 또는 계약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제시) •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 업무 •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 자금조달, 투자 관련 알선 중개업무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 그 밖의 재무제표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이해상충

34)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35)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와 지배·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회사도 직무제한에 포함됨

36)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수행 시 이해상충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8.10

금융당국 보고자료

「외부감사 수행 시 이해상충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18.10.4.)」

(유의사항) 감사인과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상 허용된 업무인지 점검하고,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법령상 허용된 비감사용역이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필요

모범 기준

2.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에 경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외부감사인이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지배기구유의사항레터:warning letter)을 받은 경우에 외부감사인이 경고사항을 통해 제기한 전문가적 의구심 또는 우려사항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³⁷⁾
 - 경고사항이 핵심감사제와 관련된 경우, 본권 별책을 참고함

〈표V-19〉 경고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인식 관련 내부통제의 미비점 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수익인식과 관련된 회계정책, 회계추정, 재무제표 공시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 감사수행 중 직면한 유의적 난제• 수익인식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배기구의 주의를 환기하고 적절한 경고를 주기 위한 내용

- 경고사항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감사위원회가 달리 알고 있거나 외부감사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³⁸⁾

37)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제3장 제2절 제13항.

38)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제3장 제2절 제12항.

〈표 V-20〉 경고사항 예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핵심감사 관련 경고사항 • 수신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또는 동 기업의 지배기구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수행한 감사업무와 그 결과 - 핵심감사사항의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지배기구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

- 감사위원회가 경고사항을 검토한 후,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³⁹⁾
 - 후속된 외부감사업무 수행 시 회사가 해당 업무 수행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업무수행 차질 사항이 적힌 문서를 수령하여 회사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금융당국
보도자료**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금융위원회, 2017.12.20.)」

- 핵심감사제(KAM)를 상장회사에 전면 도입
 - (주요내용)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 (기대효과) 감사보고서가 회사의 주요 재무적 이슈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성 증대

39)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제3장 제2절 제12항.

-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
 - (주요내용) 현재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표시되는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표시하도록 순서를 변경.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신설하며, ‘계속기업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을 강조사항에서 분리하여 별도 기재하고, 경영진(지배기구 추가) 및 감사인 책임 단락을 끝부분에 기재
- 상장회사 계속기업 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시내용 평가 강화
 - (주요내용)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강화. 회사는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KAM으로 기재할 수도 있음
 - (기대효과)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사건 발생시, 그 사건이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체크리스트 ·
템플릿**

■ 외부감사인으로 경고사항을 받을 경우 업무 수행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았는가?			
위에서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였는가?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 감사위원회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거나 외부감사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담당 이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하였는가?			

3 외부감사 종료단계

모범 기준

3.1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외부감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감사)는 감사인의 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위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법 제10조 제5항, 제6항 제23조 제1항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선임관련 준수사항에 기재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표V-21〉 감사용역 체결현황 예시(사업보고서 내 기재내용)⁴⁰⁾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X기				
제X기				
제X기				

40)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20.1.30

- 외부감사인이 마련한 외부감사 계획에 따라 실제 업무가 이행되었는지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외부감사 실시내용과 감사별 투입 인원 및 투입 시간 예시를 참고하여 평가함
 - 평가 내용은, 현재의 외부감사인과 재계약 고려 시에도 반영되어야 됨

〈표 V-22〉 외부감사 실시내용 예시(감사보고서 내 기재내용)

구분	내역		
전반감사계획	수행 시기: 20XX년XX월 XX일-20XX년 XX월 XX일(XX일) 주요내용:		
현장감사	수행 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XX월XX일-XX월XX일	상주 X명, 비상주 X명	
	XX월XX일-XX월XX일	상주 X명, 비상주 X명	
재고자산실사	실사(입회)시기:		
금융자산실사	실사(입회)장소:		
	실사(입회)대상: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기타조회()		
지배기구와의 의사소통	수행 시기: 참석인원: 회의방식: 주요 발언 내용: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수행 시기:		

〈표 V-23〉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예시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 업무 담당 공인회계사						전산 감사, 세무 및 가치 평가 전문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투입인원수															
투입	분반기 검토														
	감사														
	합계														

**금융당국
보도자료**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2018.10.23.)」

-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화
 - 감사인 선임 시 합의된 사항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감사인이 회사에 불필요한 외부자문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 평가
 - 감사인 선임 시 전기(前期) 감사인 평가에 활용

모범 기준

3.2 외부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동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 시 하기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함⁴¹⁾
 -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수행한 증명, 보고, 의견 및 검토에 대한 평가
 -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회사의 검토의견 및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 특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고 이와 관련한 회사의 수정 여부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
 -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과 그 선택과 관련한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평가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에 중대한 의견불일치(discrepancy)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책을 건의하고 사후에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중요 시정사항이 업무집행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⁴²⁾
 - 감사수행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제시한 수정사항이 존재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간에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41)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제3장 제3절 제14항.

4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2차 개정) III.1.3, 2016.7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단계에서 수행한 기업에 대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결과가 외부감사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외부감사 결과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아야 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에 중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책을 건의하고 사후에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 시정사항이 업무집행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 예시

- 감사종료 단계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사항

(1) 감사수행일정

OO회계법인은 (주)XXX 및 국내 종속회사 5개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분	분·반기검토	중간감사	재고실사	기말감사	총투입시간
(주)XXX	1분기: XXXX년 XX월 XX일-XX일 반기: XXXX년 X월 XX일-XX일 3분기: XXXX년 X월 XX일-XX일	XXXX년 XX월 XX일-XX일	XXXX년 XX월 XX일	XXXX년 XX월 XX일-XX일	X,XXX 시간
(주)ZZZ	N/A	XXXX년 XX월 XX일-XX일	XXXX년 XX월 XX일	XXXX년 XX월 XX일-XX일	X,XXX 시간
...

(2)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감사수행절차

당기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계정과목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미수정왜곡표시사항을 제외하고는 보고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핵심리스크	금융자산	매출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주)XXX					
(주)ZZZ					
...

(3) 미수정왜곡표시사항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수정권고 사항 중 경영자가 동의하지 않음에 따른 미수정왜곡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요성 수준 이내에서 경영진 진술서에 포함하여 대표이사의 서명을 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IAS 19호 장기종업원급여에 준하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인식하여야 함에 따라 당기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계리법인의 평가를 받아 별도재무제표에 한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0억 원의 미수정왜곡표시사항이 존재합니다.

(4) 그룹감사인으로서 업무수행 절차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인해 (주)XXX 감사인이 종속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구분	감사인	주요부문 여부	주요 수행절차
ZZZ	A회계법인	주요부문	감사 지침서 발송 주요 계정과목에 대한 분석적 검토절차 수행
YYY	B회계법인	소규모부문	감사보고서 징구 분석적 절차
...

(5) 감사수행 결과 주요 회계이슈

당기 (주)XXX와 국내 종속회사 5개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 독립성

OO회계법인은 XXXX년 XX월 XX일 현재까지 (주)XXX에 대한 제공서비스 현황을 XXXX년 XX월 XX일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으며, 이후 추가 제공한 서비스는 없습니다.

본 감사인은 외부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였습니다.

(7) 부정·법규위반

당해 감사 중 본 감사인이 발견한 기업의 성과와 수익성을 조정하려는 부정은 없습니다.

당해 감사 중 본 감사인이 발견한 법규위반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없습니다.

(8) 후속사건

외부감사인이 인지하고 있는 XXXX년 말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하기 기재된 내역 이외에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사건	세부내역 및 회사의 회계처리
(주)YYY(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상) 소송판결 확정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으로 회사에서는 해당 금융자산을 전액 손상처리함

[Reference] IAS 10 보고기간 후 사건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사건이 보고기간 후에 확인되는 경우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9) 서면진술

본 감사인은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을 완수하였고, 감사업무 조건에서 합의한 대로 모든 관련 정보를 본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으며,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는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경영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서면진술은 감사보고서일에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모범 기준

3.3 회계 관련 평가 및 추정에 대한 검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시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 기초자료 등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아 검증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평가와 추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함. 특히 회계처리에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더 철저히 검증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는 이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 진행률 적용기업의 경우 총공사원가 추정과 관련한 사항⁴³⁾
 - 진행률 산정의 기초자료 변동내역 및 미청구공사, 공사선수금, 공사손실 총당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
 - 중요한 계약체결·변경 등 최근 정보를 신속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대규모 자산 양·수도, 신규진출사업의 사업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체크리스트 · 템플릿

■ 회계 관련 평가 및 추정 감독 수행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시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된 기초자료 등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아 검증하였는가?			
감사의견의 변형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고, 그 처리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는가?			

43)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제3장 제3절 제15항.

모범 기준

3.4 외부감사의견에 대한 평가

감사의견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고, 그 처리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사의견의 변형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차기 사업연도 감사절차 수행 시 외부감사인이 해당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의견 등에 반영하도록 함⁴⁴⁾

44)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제3장 제3절 제17항.

모범 기준

3.5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평가하여 차기 연도의 감사계획 수립과 외부감사인 선임 시 반영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별도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적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사후평가하고, 재계약을 추진한다면 평가 결과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유무를 선정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함
- 이러한 평가에는 ‘경영진이나 내부감사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포함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단계에서 ‘외부감사 담당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외부감사과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후의 외부감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내부감사기구 유형이 감사인 경우

-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수행절차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감사의 경우 평가한 내용을 문서화 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적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고 감사업무에 따른 충분하고 합리적인 감사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주기로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례 예시

I. 외부감사인 평가표(External Auditor Assessment Tool)⁴⁵⁾

- 아래 제시하는 외부감사인 평가표는 미국의 Audit Committee Collaboration이 개발하고, Center for Audit Quality가 발표한 평가표를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수정하여 번역한 것임
 - 2012년 최초로 발표된 평가표에 미국 상장회사 회계 감독위원회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의 감사품질 지표(Audit Quality Indicator, AQI)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고, 미국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2017년 4월에 새롭게 발표된 평가표를 기초로 함
 - 동 평가표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감독 및 감사보수 결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네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짐

응답자: 경영진이나 내부감사팀

〈부문1〉

감사업무의 품질과 투입되는 인력 및 자원의 충분성: 감사업무 수행팀

	항목	평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이사와 업무수행팀원은 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 회계, 감사 등)을 갖추고 있는가? • 적절한 인원이 배정되었는가?(회계법인 경력, 해당 기업 감사 경력, 직급) • 외부감사인은 감사품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과 자주 접촉하면서, 외부감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였는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일정 및 감사시간의 추세에 대하여 논의하였는가? (1) 직급별 투입시간, (2) 전년 및 예산 대비 감사시간 변동, (3) 감사시기별 투입시간 등 • 업무수행이사는 주요 팀원의 업무량에 대해 논의하였는가? • 감사팀의 인력변동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였는가? 	

45) <http://www.thecaq.org/external-auditor-assessment-tool-reference-us-audit-committees-0>

	항목	평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계획과 부정위험을 포함한 주요 위험(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 회계, 감사 등)에 어떻게 대응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인지 논의하였는가?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계획의 위험을 적절하게 식별하였는가? •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정위험 가능성을 감사계획에 반영하였는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이사는 그룹감사 등을 위해 타 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타 감사인의 적격성, 경험 및 객관성에 관한 정보를 감사위원회에 제공하였는가? • 업무수행이사는 타 감사인의 업무를 어떻게 검토하고 감독하는지 설명하였는가? • 업무수행이사는 타 감사인과의 중요한 논의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이사나 주요 팀원의 변경이나 교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충족하였는가? • 외부감사인은 상황이나 위험의 변화에 따라 감사전략을 적절히 조정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조정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였는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내부의 전문팀(예를 들어, 회계 및 감사 자문, 품질관리, 공정가치평가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와 공유하였는가? • 그러한 자문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인은 유의적인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업무 배정을 하였는가? 	

〈부문2〉

감사업무의 품질과 투입되는 인력 및 자원의 충분성: 회계법인

	항목	평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기관에 의한 감리 또는 내부심리(또는 국제 네트워크에 의한 감사품질 검토)를 받은 경우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해당 감사업무의 선정 여부, 발견사항,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었는가? • 동종 산업에 속하는 다른 기업의 감독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와 논의하였는가? • 발견사항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감사위원회에 설명하였는가?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품질관리 시스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는가? • 외부감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의 리더쉽과 핵심가치 등이 감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법인은 기업의 중요한 회계정책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과 산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지방,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 적시에 감사업무를 종료하기 위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투입하였는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규모, 복잡성 및 위험에 비추어 볼 때 감사보수가 합리적이고 충분한가? • 감사보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이유(예를 들어, 업무범위의 변경)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논의하였는가? 또한 감사위원회는 그 이유에 동의하였는가? 	

〈부문3〉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항목	평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전문적이며 개방적인 대화를 하는가? •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나 감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가?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은 회계추정과 판단의 합리성을 포함하여 기업 재무보고의 품질에 대해 적절히 논의하였는가? •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책이 산업 동향이나 업계 선도기업과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설명하였는가? • 외부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예를 들어, 사업보고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설명하였는가?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회의(private session)를 통해서 외부감사인은 민감한 사안(경영진의 재무보고 절차에 대한 우려사항, 내부고발자 정책, 재무보고 담당부서의 능력)을 전문적이고 솔직하게 논의하였는가? •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협조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즉시 알렸는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거나 감사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기준이나 회계감사기준의 제·개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는가? 	

〈부문4〉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

	항목	평가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은 독립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예외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가? •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위한 안전장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는가?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간의 중요한 의견차이가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외부감사인은 회계이슈에 대하여 분명한 의견을 표시하였는가? •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전문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졌는가?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 업무에 의존할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의존의 범위에 동의하였는가? •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에 중요한 의견차이가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는가? • 내부감사의 발견사항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전략을 변경하거나 범위를 확대하였는가?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의 결과를 활용시, 감사위원회는 동의하였는가? • 내부감사와 유의한 견해차이가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었는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비감사용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업무수행이사는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을 지킬 수 있는 회계법인의 안전장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는가? 	

사례 예시

II. 외부감사인 평가를 위한 질문서

- 외부감사인과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있는 경영진이나 내부감사 팀에게 본 양식을 이용하여 외부감사인 평가를 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마지막 13번 항목을 제외하고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여 평가 점수를 기입하도록 함



응답자: 경영진이나 내부감사팀

외부감사서비스의 품질		점수
1	외부감사인은 업무에 충실한가? (예를 들어, 기일 준수, 논의 필요 시 연락 가능)	
2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이 원활한가? (예를 들어, 산업 관련 사업위험 및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에 정보를 요청하는지 여부, 이슈를 적절히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하는지 여부, 변화하는 위험에 빠르게 적응하는지 여부)	
3	외부감사인은 기회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예를 들어, 잠재적인 사업위험에 대해 예측하고 이에 대한 직관 및 접근법을 전문적으로 제공)	
4	감사보수에 상응하는 감사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외부감사인은 원가측면에서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회계법인의 자원		점수
5	외부감사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를 실무에 적절하게 적용하는가? (예를 들어, 전문적인 지식과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이슈에 대해 현실적인 분석을 하는지 여부, 각 감사팀원들은 적절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속한 산업과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사업 위험, 절차, 시스템과 운영에 대해 이해하는지 여부, 관련 산업 경험을 공유하는지 여부, 회계법인 전문가를 산업 이슈에 활용하는지 여부)	
7	외부감사인은 적시에 충분한 인원을 배정하여 업무에 투입하는가? (예를 들어, 업무경력에 기반을 둔 적절한 인원구성, 공정가치 평가 및 보험수리적 계산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가 활용, 일정 준수를 위한 충분한 인원 투입)	
8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는가? (예를 들어, 적절한 수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지 여부, 구두 또는 문서 상 적합한 의사소통 여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여부, 회계기준 등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9	회계법인이나 그 명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였는가? (예를 들어 다른 고객사에 대한 비밀 유지를 엄수하면서 회계법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언하였는지 여부, 공인회계사 관련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기업이 감리 대상에 선정된 경우 회계 및 감사 이슈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였는지 여부)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		점수
10	외부감사인은 성실성과 객관성을 보여주었는가? (예를 들어, 감사기간 동안 적절하게 질문하고, 적합한 담당자에게 해결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이슈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	
11	외부감사인은 독립적인가? (예를 들어, 독립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독립성 준수와 관련된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하였는지 여부)	
12	외부감사인은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솔직하고 명확하였는가?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소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는지 여부,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조직의 적합한 직급의 담당자와 논의하였는지 여부, 민감한 문제를 잘 다루었는지 여부)	
권고사항		답변
13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해 외부감사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사례 예시

Ⅲ. 외부감사 담당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단계에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설문지를 외부감사 담당 공인회계사에게 보내어 외부감사과정에 대해서 평가함

응답자: 외부감사 담당 공인회계사

질의내용	답변
감사계획을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는지 여부, 보고하였다면 보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바람	
감사품질 관리 및 독립성 유지·평가를 위한 귀 회계법인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설명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된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여부	
투입된 감사인력은 업종 및 회계·감사 이슈에 특화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실제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등은 최초 감사계획 보고서 보고된 내용대로 투입하였는지 여부, 이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귀하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감사 수행 시 회사로부터 필요한 인력 및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았는지 여부	
감사보고서에 대해 심리담당 파트너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담당 파트너의 검토·승인 과정에서 쟁점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사후조치는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질의내용	답변
귀 회계법인은 최근 2년 이내 감독당국 제재(과태료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사유와 내용은 무엇인지?	
당사의 감사에 참여한 직원 중에서 감독당국으로부터 또는 내부적으로 최근 2년 이내 제재를 받은 직원이 있는지 여부	
당사에 대한 감사기간 중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계획 수립, 감사실시 등 감사과정에서 내부감사부서와의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감사결과를 적시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는지 여부	
감사 수행 중 직면한 문제점이나 우려사항, 경영진과의 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즉시·직접 보고하였는지 여부	
향후 개정될 회계기준·회계감사기준 등 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감사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사후 보고 등 피드백을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	

VI.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1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모범 기준

1.1 감사위원회 권한의 명확화 및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권한과 성과를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이사회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독 기능을 수행함
-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권한과 성과를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이사회에게 제안하여야 함.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기업의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함

모범 기준

1.2 감사결과외 이사회 보고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의 실시절차와 결과를 기록하는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내부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서명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내부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¹⁾
 -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과 이 사항이 기술된 방법
 - 외부감사 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또는 재선임에 대한 제안
 -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

1) 금융투자협회(구 한국증권업협회),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79p, 2003

모범 기준

1.3 이사의 부정행위 등의 보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외부감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함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 및 시정을 회사 대표자에게 요구해야 함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위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함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정관·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통보받은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법 제22조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외부감사법에서는 부정행위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감사)의 의무를 특정하고 있음
 - 법이 정함에 따라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외부감사인이나 감사위원회 중 누가 발견하든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법은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와의 협조를 위해 본 모범규준에서는 이사회에도 보고할 것을 권장함
 - (사례1) 외부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며,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수행
 - 이는 미국의 “증권거래법(1934) Section 10A”를 도입한 것임.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SEC에 보고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미국의 “증권거래법(1934) Section 10A”에 의하면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

〈표VI-1〉 미국 증권거래법(1934) Section 10A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부정행위 발견 대처 절차²⁾

- ①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
 -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회사의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확인
- ② 상기 절차 후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달
 - 부정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에 대한 평가
 - 경영진이 시의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시정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표준 감사보고서 발행을 거절하거나 감사계약을 철회할 것을 고려

*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제3의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과거 재무제표 수정, 내부통제강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수행
- ③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상기 ②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전달 받은 후 1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인에게 증권거래위원회의 보고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④ 만약 증권거래위원회의 보고문서 사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철회하거나, 상기 ②에 따라 회사에 전달한 검토 결과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함
- ⑤ 상기 ④에 의해 감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은 상기 ②에 따라 회사에 전달한 검토 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사례2)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함

2) 이창우·정도진·김이배·전규안·이재은·이명곤,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사례3) 외부감사인이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됨

〈표Ⅵ-2〉 부정행위 발견 유형별 부정행위 등의 보고 방법 요약

발견한 사실	발견 주체	조치사항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사례1)	외부감사인은 ① 감사위원회(감사)에 통보하고, ②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하고, ③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감사위원회(감사)가 발견한 경우 (사례2)	감사위원회(감사)는 외부감사인에게 통보 → 외부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사례3)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감사)에 통보 → 감사위원회(감사)는 회사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권한이 있으며,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 → 감사위원회(감사)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 감사위원회에 의한 부정행위 적발 후속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감사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모범 기준

1.4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견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간에 의견불일치가 있을 때,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사위원회는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간에 의견불일치가 있을 때,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적절한 논의를 하여야 함. 그러나 계속해서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사위원회는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함
 - 법에 규정된 보고사항³⁾에서도 별도의 의견불일치 사항이 없다면 그러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하면 됨

3) 상법 제4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해야 함

2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

모범 기준

2.1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관련 주요내용 공시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관련 내역을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가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사업보고서’와 ‘주주총회’임
-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관련 규정, 활동 내역, 교육·연수 내역,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및 보상내용 등을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인 경우 회의일시, 회의시간, 회의 내용, 참석자 등을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현장방문 등 회의 이외의 활동도 중요한 감사위원회 활동이므로 활동일시, 활동내역 및 참석자 등을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함

〈표VI-3〉 주주 등에게 공시하여야 할 감사위원회 관련 내역

분류	내용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공시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및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의 외부 공시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공시	감사위원회 회의 수, 투입시간, 비회의 활동내역에 대한 외부 공시
감사위원회의 교육·연수 내역 공시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훈련내역 및 투입시간 외부 공시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및 보상 내용 공시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및 보상수준과 내용 외부 공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 공시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력, 기업과의 중요한 거래의 유무, 기타 독립성에 관련되는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공시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와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를 규정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감사위원회와 연관된 항목이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되었는지 살펴야 됨
 - 동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원칙을 Comply or Explain(원칙 준수, 미준수시 사유설명) 방식으로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10대 원칙 중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원칙은 ⑨ 내부감사기구와 ⑩ 외부감사인임

〈표VI-4〉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기재 10대 핵심원칙⁴⁾

분류	핵심원칙(총 10개)	공시내용 예시
①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 분산 노력 •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②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발행 현황 • IR 개최 현황
③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 리스크 관리정책 존재 여부
④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 이사의 전문성
⑤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등간의 이해관계 여부
⑥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개최 빈도 • 이사회 운영규정 공개
⑦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감사위원회 등)
⑧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수정책
⑨ 내부감사 기구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 개최 빈도 •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

4) 금융감독원, "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기대". 2018.3.20

〈표VI-4〉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기재 10대 핵심원칙⁴⁾ (계속)

분류	핵심원칙(총 10개)	공시내용 예시
⑩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 외부감사인 독립성(경영자문 여부 등)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감사위원회규정 또는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사례 예시

■ 감사위원회 회차 : 회의일(회의시간) 및 안건 통지일

항목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비고
1. 감사위원회 위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가결 여부 및 각 감사위원별 찬성 여부와 반대·기권사유)						
나. 제2호 안건 (가결 여부 및 각 감사위원별 찬성 여부와 반대·기권사유)						

■ 감사위원회 위원의 연간 누적 활동내역

감사위원 성명	감사위원회								활동시간	
	1회	참여 여부	2회	참여 여부	3회	참여 여부	4회	참여 여부	목표	실적
○○○										
○○○										
○○○										
소요시간										

■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위원 성명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감사위원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감사위원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2. 누적 교육 시간(총 00시간)									

모범 기준

2.2 평가결과 보고 및 공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세부원칙 8-②의 가에서는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그리고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를 기재하도록 정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III. 감사기구

I. 내부감사기구

1.8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모범 기준

2.3 재무제표 관련 주요 내용의 공시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가능성에 대한 이사회 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고려할 사항이 사업보고서에 공시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고려할 사항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판단하여야 함
 - 기업의 계속가능성(going concern,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이사회 평가에 관한 내용을 중요한 사항에 포함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고려할 사항 중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함
 - 이러한 공시는 간결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기술하여야 함. 연차 보고서나 계정과목에 포함된 정보를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 정보에 대하여 참조하여야 할 관련 정보는 제공하여야 함
 - 참고로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고려할 이슈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판단을 내려야 하며, 기업의 계속가능성(going concern)에 대한 이사회 평가에 관한 내용은 최소한 포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감사위원회는 간결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기술하며, 연차 보고서나 계정과목에 포함된 정보를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 정보에 대한 참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⁵⁾

5) FRC, Guidance on Audit Committees 5.3. 2016.4

모범 기준

2.4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주주총회 참석

감사위원회 위원장(필요 시 감사위원 포함)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위원회가 참석하여야 하는 주주총회의 범위는 정기 주주총회 뿐만 아니라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하며, 필요시 감사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도 참석함이 권장됨
 -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사항은 없으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원 참석하여 직무 충실성을 제고하는 것을 권장함

모범 기준

2.5 감사위원회의 의견진술권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법규	내용 요약	조문
상법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법 제409조의2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통

- 감사의 경우 해임 시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
- 감사위원의 경우 해임 시 의견진술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음
 - 일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해임되며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함⁶⁾
 - 특례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해임됨
 - 감사위원에게도 해임 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상법 제415조의2 제3항.

〈표VI-5〉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해임시 의결진술권 보장 규정

구분		해임권한	해임에 관한 의결진술권
감사		주주총회	보장(상법 제409조의2)
감사위원회 위원	일반 감사위원회	이사회(2/3 이상의 결의, 상법 제415조의2 제3항)	규정없음
	특례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규정없음

- 또한 감사위원의 해임 이외의 중요한 안건에 관하여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실무상, 의견진술 방식은 구두로 실시되나, 양이 방대하거나 문서화된 안내가 고려된다면, 별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배포하고 주요 요지만 설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모범 기준

2.6 주주 및 채권자와의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요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무구조 악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채권자의 의견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안내 지침

감사위원회/감사 공동

-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에서는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대표가 포함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 후보 추천시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① 감사 1명, ②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③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④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 ⑤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으로 구성됨
-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주주 및 채권자 대표가 포함되는 취지를 살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권고함
 - 특히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과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권고함

참고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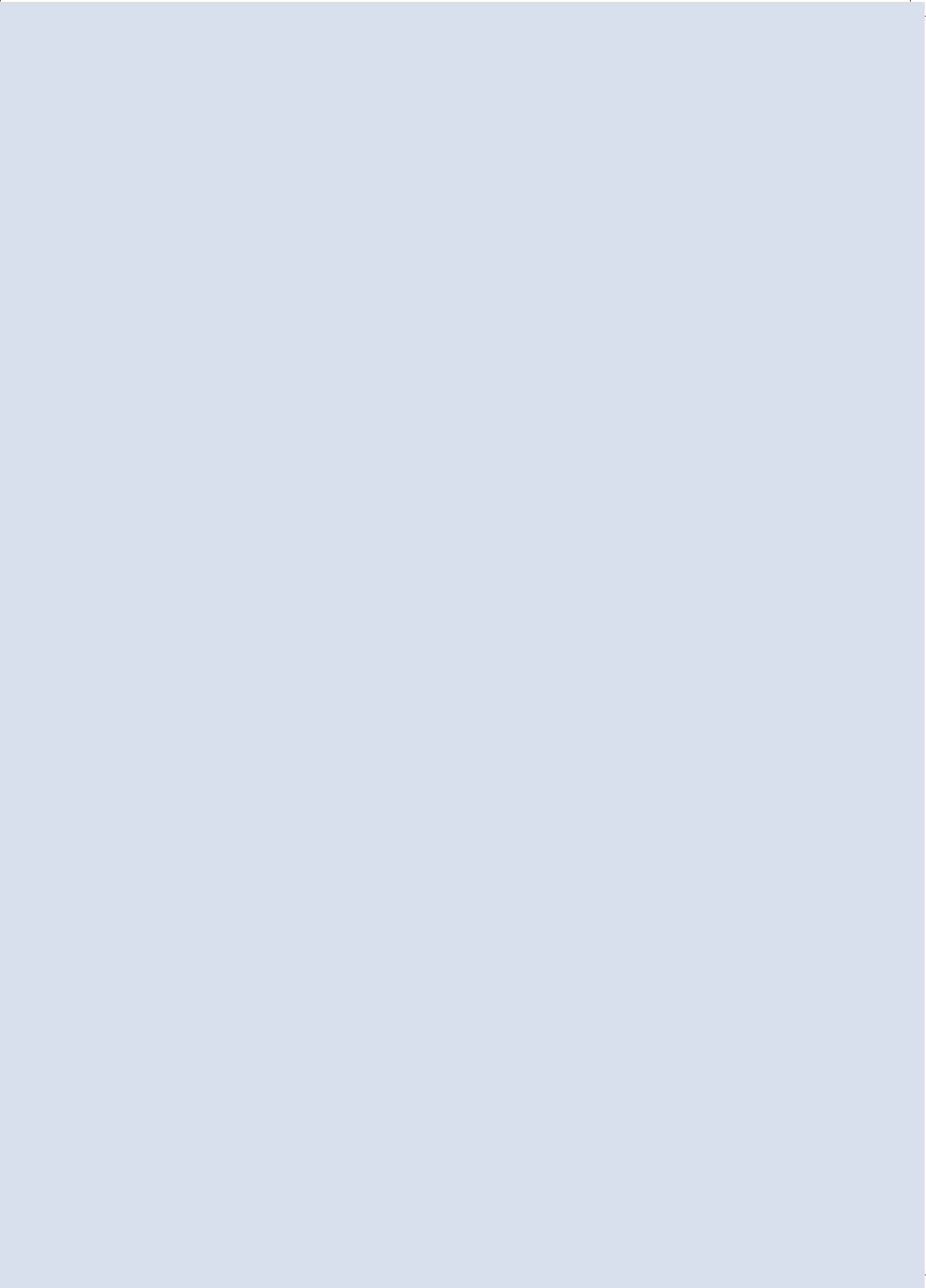
감사인선임위원회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대표가 포함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 추천시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보도자료

「금융위원장, 외국 기관투자가들 앞에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다(금융위원회, 2017.11.9.)」

■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자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 (추진 배경) 외부감사법 전면개정(18.11.1.시행)으로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에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권 신설(제11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 (주요 내용)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자에 한정하여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그 외 신청요건으로서 지분율, 지분 보유기간 등도 검토
- (향후 계획) 회계개혁 TF 등을 통해 상장회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제2부

감사위원이 알아야 할 핵심감사사항(KAM)

일러두기

2017년 12월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핵심감사제의 적용 대상이 2020년부터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가 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충분한 실무 사례와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2부 「감사위원이 알아야 할 핵심감사사항(KAM)」은 감사위원회(감사)가 핵심감사제와 관련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의 핵심감사사항 현황 및 통계분석을 통해 감사위원회(감사)가 핵심감사사항을 외부감사인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예시적으로 제시합니다.

본 가이드에서 기재된 내용들은 예시적인 내용으로 기업경영환경과 제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I

개요

II

핵심감사제에서 감사위원회(감사)의 역할

III

핵심감사사항 통계

IV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시 고려사항

V

핵심감사사항으로 고려할 주요 사항(업종별)

VI

결론: 감사위원회(감사)가 해야 할 일

I. 개요

1 핵심감사제 개요

- ◆ 핵심감사제는 2016년 수주산업에 먼저 적용되었고, 이후 2017년 회계감사기준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 전체에 단계적으로 적용됨
 - 2016년 투입법을 사용하는 조선·건설회사 등 수주산업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하여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를 선제 도입함(「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제정)
 - 이후 2017년 12월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핵심감사제의 적용 대상이 수주산업에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됨(「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제정)¹⁾
 -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
 -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리스크를 적절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무 강화
 - 핵심감사제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됨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2017.11.23

〈표1〉 자산규모에 따른 핵심감사제 시행일²⁾

적용대상	시행일 ³⁾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18년 12월 15일
자산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19년 12월 15일
자산 1천억 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2020년 12월 15일

- 종전에 수주산업 핵심감사제가 적용되던 기업은 상장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핵심감사제가 적용됨
 - 상장회사(수주산업): 회계감사기준 701에 따라 핵심감사제가 적용되는 경우,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의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 비상장회사(수주산업):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의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의 적용 대상임
- ◆ 핵심감사사항이란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하며, 이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감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함⁴⁾
 -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날짜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

3)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6.

4)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8.

II. 핵심감사제에서 감사위원회(감사)의 역할

1 핵심감사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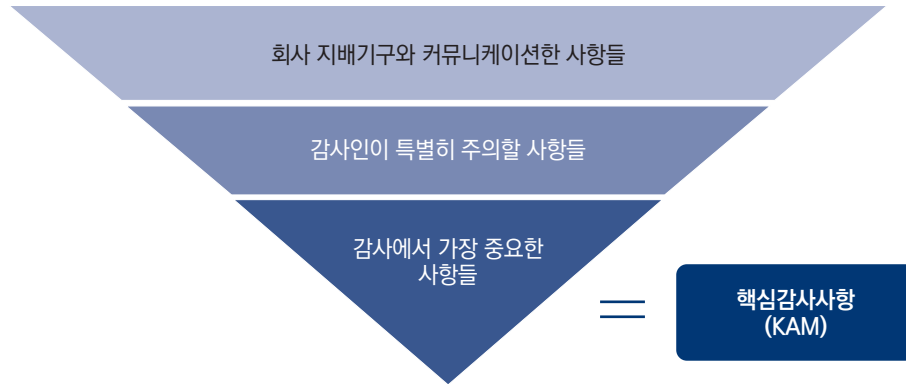
- ◆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에서 규정하는 핵심 감사사항을 선정하는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외부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야 함⁵⁾
 - 외부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별히 주의할 사항(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을 결정함⁶⁾
 - 외부감사인은 앞의 특별히 주의할 사항 중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핵심감사사항이라고 함⁷⁾

5) 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6)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9.

7)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10.

〈그림1〉 핵심감사사항의 개념도⁸⁾



- ◆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에 대하여 기재해야 함⁹⁾

8) 금융위원회,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2017.12.20

9)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11, 13.

2 감사위원회(감사)의 역할

- ◆ 감사위원회(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적절히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 701은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지배기구”는 감사위원회(감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배기구’는 ‘기업의 전략방향 및 기업의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의미함¹⁰⁾
 - 감사위원회(감사)는 내부감사기구로서 ‘지배기구’의 역할을 수행
 - 금융당국은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사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지배기구를 내부감사기구로 특정하고 있음¹¹⁾
- ◆ 외부감사인은 선정한 핵심감사사항이 무엇인지, 만약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면(선정할 사항이 없다면)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감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함¹²⁾
- ◆ 핵심감사사항은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감사)는 재무보고 감독을 수행할 때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10) 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0.

11) 금융위원회,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2017.12.20

12)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17.

Ⅲ. 핵심감사사항 통계

1 2018~2019년 사업연도 핵심감사사항 현황

〈표2〉 2018~2019년 사업연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핵심감사사항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18-2019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변화율	비율 변화율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64	17.1%	72	22.4%	12.5%	31.0%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	31	8.3%	49	15.2%	58.1%	84.1%
(수주산업 외) 수익인식	47	12.5%	29	9.0%	-38.3%	-28.1%
(수주산업)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27	7.2%	23	7.1%	-14.8%	-0.8%
금융자산 가치평가	21	5.6%	21	6.5%	0%	16.5%
총당금(총당부채) 평가	21	5.6%	19	5.9%	-9.5%	5.4%
보험부채 평가	16	4.3%	14	4.3%	-12.5%	1.9%
(수주산업) 미청구공사금액 회수 가능성에 대한 평가	18	4.8%	13	4.0%	-27.8%	-15.9%
리스 회계처리	0	0.0%	13	4.0%	신규	신규
(수주산업)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절성	20	5.3%	10	3.1%	-50.0%	-41.8%
(수주산업)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19	5.1%	10	3.1%	-47.4%	-38.7%

〈표2〉 2018~2019년 사업연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핵심감사사항 현황 (계속)

구분	2018년		2019년		2018~2019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변화율	비율 변화율
(수주산업)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 처리의 적절성	20	5.3%	8	2.5%	-60.0%	-53.4%
재고자산의 손상평가	11	2.9%	8	2.5%	-27.3%	-15.3%
사업결합 회계처리	11	2.9%	7	2.2%	-36.4%	-25.9%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	4	1.1%	7	2.2%	75.0%	103.8%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7	1.9%	5	1.6%	-28.6%	-16.8%
연결범위에 대한 판단	4	1.1%	4	1.2%	0.0%	16.5%
(수주산업 외) 원가(비용)인식	7	1.9%	2	0.6%	-71.4%	-66.7%
자산의 실재성	4	1.1%	2	0.6%	-50.0%	-41.8%
자산 취득시기	2	0.5%	1	0.3%	-50.0%	-41.8%
관계/종속기업 가치평가	6	1.6%	0	0.0%	-100%	-100%
분할 회계처리	4	1.1%	0	0.0%	-100%	-100%
계속기업 불확실성	2	0.5%	0	0.0%	-100%	-100%
기타	9	2.4%	5	1.6%	-44.4%	-35.3%
총계	375	100%	322	100%	-14.1%	0%

2 시사점

- ◆ 분석 결과, 2018년과 2019년 모두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 ‘(수주산업 외) 수익인식’이 상위 3개 항목에 해당함
 - 해당 핵심감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다수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 ‘유/무형자산 손상평가’와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는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 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된 빈도가 가장 높았음
 - ‘손상평가’의 경우, 미래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등에서 회계추정치 산정을 위한 방법론이나 기본가정, 이용된 데이터 요소, 상반되는 증거 여부 고려 등 고도의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영역에 해당함
 - ‘(수주산업 외) 수익인식’은, 수익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서(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도입되는 2018년에 핵심감사사항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9년에는 다소 줄었으나 핵심감사사항으로 다수 선정되고 있음
- ◆ 핵심감사제도가 최초 적용된 수주산업의 핵심감사항목은 5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나 이를 합산하면 선정된 빈도가 높게 나타남
- ◆ 개정된 新리스회계기준서(K-IFRS 제1116호 리스, 2018.11.14. 개정)가 2019년부터 적용되면서, 2018년 사업연도에는 ‘0’건이었던 ‘리스 회계처리’가 2019년부터 핵심감사사항으로 다수 선정되었음

IV.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시 고려사항

1 개요

- ◆ 감사위원회(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¹³⁾
- ◆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요구한 사항’ 결정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회계 추정을 비롯한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이 수반된 재무제표의 분야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유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

13)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9, A18.

〈표3〉 핵심감사사항 결정시 고려사항¹⁴⁾

-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항의 중요성. 특히, 재무제표에서 해당 사항의 중요성
- 해당 사항과 관련되는 기초가 되는 회계정책의 성격, 또는 산업 내의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적합한 정책에 대한 경영진의 선택에 수반되는 복잡성이나 주관성
-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수정왜곡표시와 집계된 미수정왜곡표시의 질적 이거나 양적인 성격과 중요성
 - ✓ 해당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감사노력의 성격과 범위. 다음 사항을 포함함
 - ✓ 해당 사항을 다루는 감사절차를 적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이나 지식의 범위
-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업무팀이 외부로부터 받은 자문의 성격
- 감사절차를 적용하고, 감사절차 결과를 평가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의 성격과 심각성, 특히 감사인의 판단이 더 주관적이 될수록 그러함
-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식별된 통제 미비점의 심각성
- 해당 사항이 개별적이지만 관련있는, 다수의 감사 고려사항과 관련되는지 여부. 예를 들어, 장기계약은 수익인식, 소송 또는 기타 우발사항에 대하여 유의적감사인주의를 수반할 수 있으며 기타의 회계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전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핵심감사사항이었던 사항이 계속해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도 핵심감사사항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¹⁵⁾

14)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29.

15)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11.

V. 핵심감사사항으로 고려할 주요 사항(업종별)

- ◆ 본 장에서는 업종별 특징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룸
 -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감사위원은 앞 장에서 다룬 내용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본 장의 내용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업, 수주산업, 기타업종으로 구분하여 안내함

1 금융업

- ◆ 금융업의 감사위원회(감사)가 2020년을 포함하여 향후 핵심감사사항으로 고려할 만한 주요 사항으로는 공정가치 측정, 보험부채 평가, 충당금(충당부채) 평가 등이 있음
- ◆ 공정가치 측정¹⁶⁾
 - 회계기준서는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의 투입변수를 3수준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정함

16)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됨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의 공시가격에 가장 높은 순위(수준1 투입변수)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수준3 투입변수)를 부여함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수준3 투입변수로 분류하며, 이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의 활동이 거의 없어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이 허용됨
 - 이러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하며, 개발된 투입변수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보험부채 평가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등의 부채가 재무제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 보험료적립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미래에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부채를 의미함
 - 보험료적립금의 산출방식은 보험계약정보가 많고, 산출방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통상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선정됨
 - 지급준비금은 재무제표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의미함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미보고 발생 손해액’과 ‘일반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을 계산할 때에는 몇 가지 통계적 방법 중 경영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선택하며¹⁷⁾, 투입변수 결정이 경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됨

◆ 충당금(충당부채) 평가¹⁸⁾

-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서(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항, 제4-9조 제6항, 별표6

18)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관련됨

- 종전에는 손상발생의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였으나, 새로운 회계기준서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¹⁹⁾ 따라 항상 인식하도록 요구함
-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여야 함
 - 기대신용손실 측정은 다양하고 복잡한 투입변수 및 가정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이 포함됨
- ◆ 금융산업의 감사위원회(감사)는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때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19) 기대신용손실이란, 보유 중인 채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미래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금액을 의미함

〈표4〉 금융업 핵심감사사항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의 분류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가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가? (예: 수준 3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수준1이나 2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은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은 효과적인가?			
외부전문가 활용 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였는가?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된 평가방법이 동종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며, 타당한 기법인가?			
보험부채 평가			
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 산출은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보험계약정보가 보험료적립금 산출 대상에 누락 없이 포함되어 있는가?			
보험계약 시스템상 금액이 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 산출에 투입되는 금액과 일치하는가?			
회사가 선택한 통계적방식이 회사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검토되었는가?			
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 산출과 관련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은 효과적인가?			
총당금(총당부채) 평가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신용등급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상환능력의 실제 변화가 있을 경우 신용등급에 시의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등)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는 충분한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히 평가되었는가?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고려하는 기간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을 넘지 않았는가?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 사건은 없었는가?			
기대신용손실 평가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은 효과적인가?			

2 수주산업

- ◆ 수주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회계위험이 높음²⁰⁾
 - 대부분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수주산업의 경우, 공사기간 중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손익변동이 큼
 - 공사수익은 공사진행률에 따라 배분을 인식하는데, 총예정원가의 변동이 수익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
 -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비용 인식 규정을 자의적인 해석가능성 존재
 - 공사진행률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의 부족 및 객관적 검증의 어려움
- ◆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은 회계위험이 높아 금융당국에서 선제적으로 핵심감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음
 - 따라서, 당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에 대한 운영지침인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을 참고하여야 함
 - 운영지침에서는 아래의 5개 사항을 우선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는 위에서 설명한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회계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5개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 공사에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절성
- 미청구공사금액 회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2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기준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2015.10

- ◆ 수주산업의 감사위원회(감사)는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때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표5〉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투입법에 의한 수익인식 회계처리 내역이 회사의 회계처리 매뉴얼에 반영되어 있는가?			
투입법 수익인식과 관련한 내부통제는 누락 없이 충분히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가?			
공사수주 심사에서 총예정원가를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되어 최종적으로 공사수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진행 중인 공사의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인 보고를 통해 원인분석이 실시되고 재무보고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 추정 시 관련한 내부통제가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총계약원가의 구성항목별로 관련부서의 근거자료와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가?			
완료된 공사의 당초 추정한 원가와 최종 발생원가와와의 비교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유사 프로젝트의 공사추정원가를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가?			
재무보고를 위한 총계약원가와 현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계약원가가 일치하고 있는가?			
총 계약원가에 대한 승인과 변경 시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있는가?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절성			
주요 프로젝트별로 공정별 진행률과 원가기준 진행률과의 차이가 합리적인가?			
정기적으로 프로젝트별 공사진행률 현황에 대한 분석 및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사진행률에 비해 청구금액 실적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결산 시점에 임박하여 비용(원가관련) 변동액이 크게 발생하는가?			
미청구공사금액 회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미청구공사금액의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내부통제가 운영되고 있는가?			

〈표5〉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체크포인트 (계속)

체크포인트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공사진행률과 공사대금청구율의 차이가 유의적인 현상이 파악되었는가?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 검토가 적절한가?			
완료공사에 대한 공사완료 증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공사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회계처리를 위한 통제가 설계 및 운영되어 적시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사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 변경 등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상위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있는가?			
공사 진행현황은 주기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주요 Milestone 달성에 대한 조건과 지연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연배상금(Liquidated Damages) 추정액 산정과 관련한 가정은 합리적인가?			

3 기타업종

◆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할 경우 감액여부를 결정해야 함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해야 함
- 자산의 손상 징후를 판단할 때에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의 변화 등 수치화 되지 않은 비정량 정보를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다음의 경우, 유/무형자산 손상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수 있음
 - 자산손상 평가에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추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 손상평가가 필요한 특정 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할 경우
- 감사위원회(감사)는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관련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때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표6〉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핵심감사사항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자산의 회수가능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예상매출액 및 원가, 성장률, 할인율, 자본적지출, 운전자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 없이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손상징후를 판단하기 위한 현금흐름창출단위가 적절한 지 검토하였는가?			
평가와 관련한 주요 가정의 변동이 경영진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 및 경영진 편의를 나타내는 징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가?			
이사회 등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과 배치되는 가정이나 요인이 없는지 검토하였는가?			
외부 전문가 활용 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지 검토하였는가?			
과거 사업계획과 당기실적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유/무형자산 손상 프로세스의 주요 내부통제가 설계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유/무형자산 손상평가’에 포함)

- 유/무형자산 손상평가는 업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임
 -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개발비의 자산 인식 등 회계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산업임²¹⁾
 - 관련 회계기준서(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르면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선 다음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6가지 요건

-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개발 완료 후 판매·사용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개발과정상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21) 금융위원회,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2018.9

- 개발비의 손상 검토에는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되고, 기업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개발비의 비중이 큰 경우가 있어 핵심감사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되어 영업이익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개발비를 가능한 한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유인이 큼
- 제조업의 감사위원회(감사)는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관련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때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표7>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관련 핵심감사사항 체크리스트

체크포인트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가?			
프로젝트별 투입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으로 계상하였는가?			
상업화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상업화 의도, 능력, 기술, 재정적 자원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가능 여부의 평가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은 효과적인가?			
(제약·바이오) 당국에서 제시하는 약품 유형에 따른 자산화 가능 단계를 고려하였는가? (아래는 당국 지침이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판단 가능) - 신약: 임상 3상 개시 승인 -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개시 승인 - 제네릭: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 진단시약: 제품 검증(허가신청, 외부임상신청 등)			

◆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

- 관계/종속기업에 투자한 주식에 손상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함
- 관계/종속기업 주식의 손상평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해당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며,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추정이 어렵고,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이 반영될 여지가 존재함

- 다음에 해당할 경우, 관계/종속기업 손상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수 있음
 - 관계/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을 경우
 - 보고기간 내 관계/종속기업 투자의 시장가치(주가)나 해당 기업의 실적이 유의하게 하락한 경우
 - 관계/종속기업이 해외에 소재한 법인이고, 해당 국가의 경기변동성이 클 경우
 - 관계/종속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의 변동성이 클 경우
 - 관계/종속기업 감사의견 변형, 신용등급 하락,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평가기관이나 거래소 등의 유의한 의견·신호가 있을 경우
- 감사위원회(감사)가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체크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음

〈표8〉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 핵심감사사항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할인율, 이자율, 성장률 등 추정을 위한 변수의 평가방법은 동종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타당한 방법인가?			
손상징후에 대한 검토 및 손상평가와 관련한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은 적절한가?			
회수가능액을 평가하는 데 참여한 전문가의 적격성과 독립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추정에 사용된 가정 및 변수가 승인된 예산 및 사업 계획과 일관성이 있는가?			
동종산업에 속한 기업정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가 적용되거나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가?			
과거 사업계획과 당기실적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 수익인식²²⁾

- 수익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서(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다음에 해당할 경우, 수익의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수 있음
 - 수익인식의 유형이 다양하거나, 재화와 용역이 동시에 제공되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될 경우
 - 고객과 새로운 형태의 매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감사위원회(감사)는 수익인식 관련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때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표9〉 수익인식 핵심감사사항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신규 체결된 계약에 대해 수익인식을 위한 5단계 분석을 실시하는 통제절차가 구비되어 있는가?			
계약의 식별: 고객 여부 판단을 위한 통제절차가 구비되고 계약을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가 이루어지는가?			
수행의무: 계약 내에 존재하는 수행의무는 구분해야 하는지 단일 수행의무로 봐야 하는지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래가격의 결정: 거래가격 산정 시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로 예상되는 금액의 산정에 대한 검토 시 변동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가?			
거래가격의 배분: 개별판매가격은 적절히 결정되었으며 판매가격에 근거하여 수행의무에 배분되었는가?			
수익인식 방법: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인식을 한 시점에 인식하거나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문서화 되어 있는가?			
수익인식의 총액 대 순액(본인 대 대리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관련한 검토한 문서가 구비되어 있는가?			

22)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됨

◆ 리스 회계처리²³⁾

- 리스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서(K-IFRS 제1116호 리스)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새로운 회계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 기업에게 리스계약에 대하여 소액자산리스와 적용면제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리스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할 경우, 리스 회계처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수 있음
 - 체결된 리스계약의 건수가 많거나 유형이 다양할 경우
 - 리스계약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표10〉 리스 회계처리 핵심감사사항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리스 관련한 계약 전체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가?			
당기 중 신규 체결된 리스계약까지 모두 취합된 전체 리스계약 리스트를 관리하고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결정을 수행하는 지 확인하였는가?			
리스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계약(용역계약, 전용공급계약, 광고 계약 및 건설계약 등)의 목록을 입수하고 계약 조건별로 리스요소가 적절하게 식별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그 적용방법이 일관되게 적용되었고 관련 내용은 공시가 이루어졌는가?			
리스계약의 기간 산정 시 발생 가능한 유의적 사건(매수선택권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였는가?			
사용권 자산에 포함된 추정치 금액(복구원가, 리스개설 직접원가 등)산정을 위한 가정과 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하였는가?			
리스부채 측정을 위한 할인율(내재이자율을 적용하되 어려울 경우 증분차입이자율 사용)과 리스료 측정은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가?			
리스계약의 변경 시, 리스부채 및 사용권 자산의 재측정이 적절한지 검토하였는가?			

23) *K-IFRS 제1116호 리스*와 관련됨

◆ 코로나19 관련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유행은 전 세계적 경제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모든 회사가 유의하게 고려해야 할 사건임
 - 핵심감사사항의 결정 시,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²⁴⁾
- 코로나19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자체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거나, 그로 인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항목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표11〉 코로나19 관련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유/무형자산			
전기에 손상을 인식하였거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미래 사업계획의 업데이트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적격자산에 대한 개발활동에 대한 중단여부가 검토되었는가?			
리스료 할인의 발생여부, 있다면 관련 회계처리와 근거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수익인식			
계약의 변경: 코로나19가 기존 계약의 범위나 계약가격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변동대가: 코로나19가 추가적인 변동대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신규 계약체결 시 권리와 의무가 집행가능한 지를 평가할 때 코로나 19의 영향이 고려되었는가?			
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제품이나 용역의 생산·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매출채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고객이 속한 특정 산업이나 지역, 국가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검토하였는가?			
금융부채: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조건의 변동사항이 있는가?			

24)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9(c).

〈표11〉 코로나19 관련 체크포인트 (계속)

체크포인트	예	아니오	해당 사항 없음
지분투자: 피투자기업의 지역/산업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손상평가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생산라인 일시중단의 효과가 부적절하게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배분되었는가?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평가: 수요감소로 인한 순실현가능가치 변동은 없는가?			
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업데이트: 미래사업계획과 현재까지의 실적을 비교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및 실현시점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는가?			
코로나19로 인한 세제혜택 검토: 코로나19로 인한 세액 공제나 법인세 면제가 있을 경우, 그 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기타			
구조조정: 회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가? 있을 경우, 관련 종업원 급여가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는가?			
총당부채: 원재료 공급지연, 영업장 폐쇄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총당부채 인식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보험부채: 규제당국의 조치에 따른 보험료 회수 유예, 보험료 청구 빈도 등 보험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가?			
계속기업가정: 차입금 상환 혹은 연장검토 및 유동성 자산의 충분성 등을 포함한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는가? 최초 사업계획 이후에 실적을 감안한 업데이트된 사업계획의 입수가 필요한 지 검토되었는가? 감사 및 검토보고서 발행일 까지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효한지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공시사항의 검토: 최근 뉴스 등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의 유의적인 변화에 대한 공시가 필요한 지 검토하였는가?			

- 영국의 재무보고위원회(FRC)는 코로나19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으로 결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함²⁵⁾

25) FRC, "COVID-19 Bulletin March 2020", 2020.3

VI. 결론: 감사위원회(감사)가 해야할 일

- ◆ 감사위원회(감사)는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계획, 실행 및 종료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표12〉 회계감사기준 701에 따른 감사위원회(감사)의 핵심감사사항 관련 역할

구분	주요 내용
핵심감사사항 후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인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하기 이전이라도, 예비적인 견해를 감사 계획단계에서 감사위원회(감사)와 논의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고려되는 사항들이 감사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업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²⁶⁾) • 전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핵심감사사항이었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²⁷⁾
핵심감사사항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인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감사위원회(감사)는 선정된 핵심감사사항과 그 이유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함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 선정에 고려할 수 있음²⁸⁾
(외부감사인인) 감사보고서 완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보고서 초안을 수령하여 핵심감사사항 관련 기재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²⁹⁾ • 기업의 원천정보가 부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³⁰⁾ • 재무제표 이용자가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균형 잡힌 설명이 제공되었는지 확인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된 사항 문서화

26)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60.

27)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11.

28)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9(c), A25, A26.

29)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61.

30)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35, 36.

- ◆ 감사위원회(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사항의 결정과 진행과정 및 최종 감사 결과보고에 관여하여 수행된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보고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향상시켜야 함³¹⁾

31) 회계감사기준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3.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색인



[ㄱ]

- 감사록 • 60
- 감사위원 교육 • 92-95
- 감사위원 독립성 • 43-44, 50, 70, 75, 77-78
- 감사위원 보수 • 84-91
- 감사위원 선임 • 32
- 감사위원 연간활동계획 • 57-59
- 감사위원 임기 • 39-40
- 감사위원 전문성 • 45-48, 77-79
- 감사위원 추천 • 37
- 감사위원회 권한 • 98, 102-104
- 감사위원회 안건개발 • 55-57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49-51
- 감사위원회 평가 • 75-81
- 감사위원회 회의 • 61-63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 15
- 감사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 63, 124, 151, 157, 158, 163, 195
- 감사인선임위원회 • 170, 177-178
- 국제내부감사인협회 • 20, 51
- 금융업 핵심감사사항 체크포인트 • 261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76, 92, 234-235, 238

[ㄴ]

- 내부감사부서의 감독 • 161-162
-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 17-19
- 내부신고제도 • 131-136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평가 • 137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수행 체크리스트 • 148-149

[ㄷ]

대주주 의결권 제한 • 35-36

[ㄹ]

미국 SOX (사베인스-옥슬리)법 • 18, 27

[ㅁ]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체크포인트 • 263-264

스튜어드십 코드 • 36, 244

[ㅂ]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 • 177-178

외부감사인 평가표 • 217

외부감사인 후보평가 기준 • 171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의사소통 • 189-195

[ㅅ]

재무보고 • 118-124

주기적 지정제 • 172-173, 175

직권지정제 • 173-175, 180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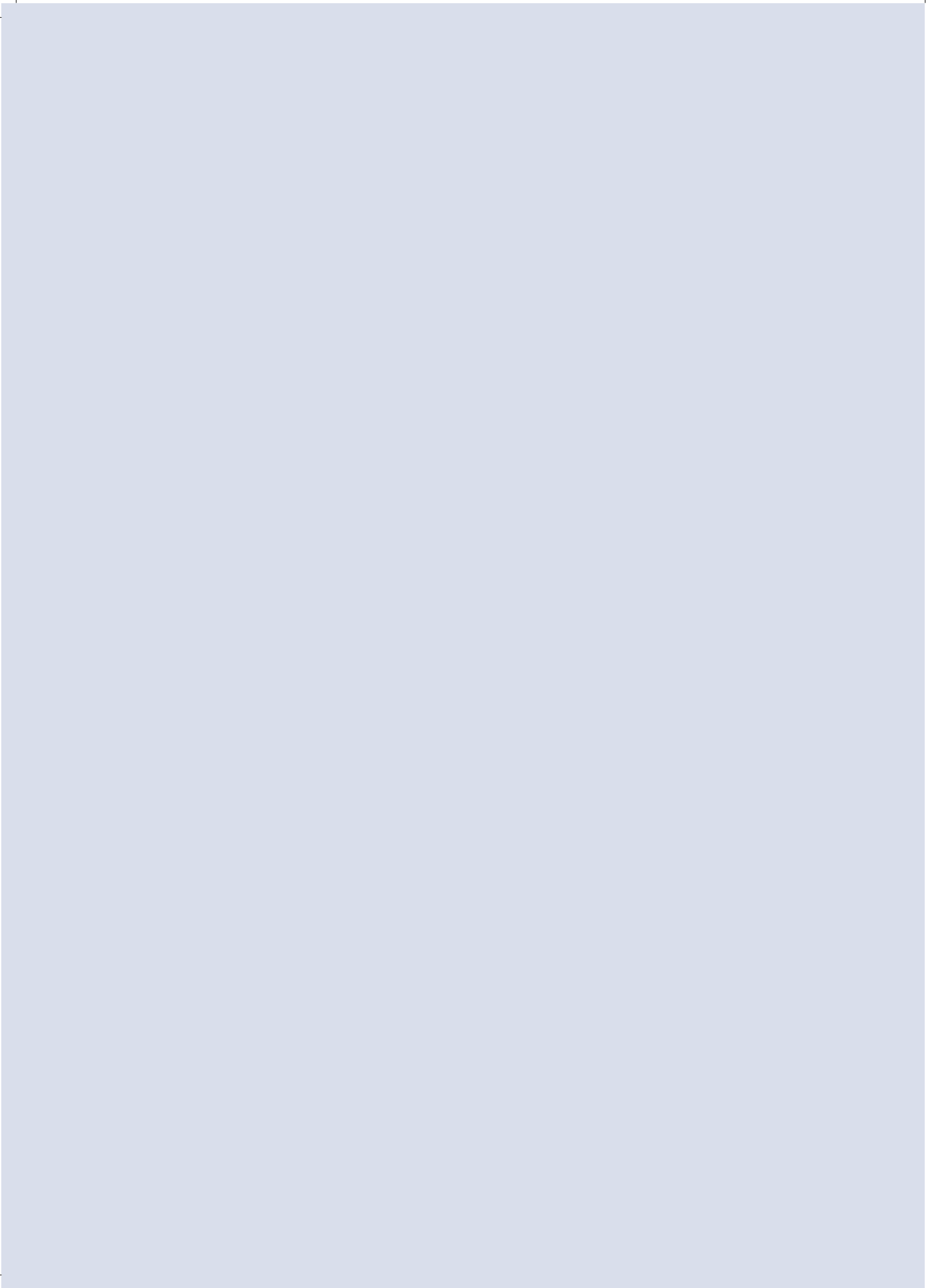
핵심감사사항-코로나19 관련 체크포인트 • 271-272

핵심감사제 프로세스 • 250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26-27, 29-30, 45-46

회계기준의 타당성 평가 • 119, 125-127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집필진 및 자문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정헌 기획·조사본부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paulhec@kicpa.kr

박성원 연구원
경영학박사
scdjsw@kicpa.kr

박서영 변호사
seoyoungp@kicpa.kr

김지수 사원
jisu8202@kicpa.kr

삼정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김유경 ACI Leader, 전무이사
youkyoungkim@kr.kpmg.com

심정훈 상무이사
jshim@kr.kpmg.com

이민형 수석연구원
minhyunglee@kr.kpmg.com

강환우 이사
hwanwookang@kr.kpmg.com

강병규 연구원
byoungkyoukang@kr.kpmg.com

자문위원

김재윤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대표

이동근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이사

김준철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이사

정형록 교수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www.kicpa.or.kr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7길 12 (공인회계사회관)
TEL (02) 3149-0100 FAX (02) 3149-0200